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64-01



혁신·경제 연구

#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연구

Studies on the Justifiable Exercise of Patent Right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혁신 · 경제 연구

#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연구

A Study on Innovation and Economy

Studies on the Justifiable Exercise of Patent Right

2018. 12



#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프라사업의 기초연구활성화 중, “혁신·경제 연구 -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  
화를 위한 세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참 여 연 구 원
  - 연 구 책 임 자 : 하홍준(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 여 연 구 원 : 조상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박성화(前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 Summary

# 요약문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기업의 R&D에 따른 IP 창출·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
  -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적극적 조세지원은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 \* 2016년 글로벌 제약사인 Glaxo Smith Kline이 특허박스(Patent Box)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한 영국에 대규모 투자
- 우리나라는 R&D를 통한 IP 조세지원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R&D 투자의 양적 수준에 비해 R&D의 질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기업의 혁신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방안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R&D를 통한 IP 활동은 불확실성이 높아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R&D를 통한 IP 활동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급주체인 기업의 조세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정책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R&D를 통한 IP 관련 조세지원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적 동향에 대응하고 국내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함

### □ 주요 연구내용

- (주요연구내용) 기술혁신활동을 대표하는 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 이슈를 도출함
  - 특허조사·분석 비용의 R&D 세액공제, 특허출원·등록 비용의 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표 | 지식재산 관련 활동별 세제 이슈

R&D	IP창출	IP취득	IP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조사·분석 비용의 R&amp;D 세액공제 미적용 (조특법 시행령 별표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출원·등록 비용의 세액공제 제외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5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li> <li>대여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3항)</li> </ul>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제3호 어목)			

□ 국내 기술혁신활동 관련 세제 현황

- (특허조사·분석 관련 세제)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불명확함
  - 중복 R&D 및 미활용 특허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특허·기술의 조사·분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특허정보는 기술혁신의 경쟁적 측면을 제시하고, 발명활동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객관적 기술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접근성이 높아 R&D 과정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함
  - 특허조사·분석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과학적·기술적 진전 활동과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활동 등이 R&D 활동에 해당하는지 모호함
    - \* 기술정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원 및 교수, 외국인기술자와 같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허조사·분석 비용을 기술정보비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특허출원·등록 관련 세제) 특허출원·등록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 해외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확대됨
    - \*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건수는 2010년 184건에서 2013년 1,681건으로 9배 가량 증가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감면 필요성이 63.7%로 높게 나타남

- \* 기업 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4억 5,658만 원, 8,950만 원, 7,989만 원을 지출함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IP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원·등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함
  -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로서, R&D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됨
- (기술취득 관련 세제)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과 대·중견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의 취득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세액공제 됨
  - 기술이 복잡해지고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자체 R&D 투자의 실패위험이 더욱 증가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시장 선점이 기업의 경쟁 전략으로 부상함
  - 재정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함
    - \* 2016년 대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건수가 3,973건으로 가장 많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실태조사)
  - 중소기업이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함
    -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비율 및 거래기업 간의 관계, 공제대상 기업, 공제대상 기술 등에 대해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져 일관된 조세지원정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조세지원 실적도 미미함
- (기술양도·대여 관련 세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양도와 중소기업의 기술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허용함
  - 우리나라는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거래 비용이 높고, 이로 인해 기술거래 가격이 증가하게 되어 기술거래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초래함
  -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의 양도·대여 시 조세지원을 통하여 기술거래 비용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양도 시 발생소득의 50%를 세액감면을 받고, 중소기업이 기술대여 시 발생 소득의 25%를 세액감면 받음
    - \* 기술양도·대여 관련 조세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제한한 결과, 제도 도입 후 3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도 기술이전 소득 세액감면의 규모는 2억 원에 불과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 국내 기술혁신활동 세제의 문제점

-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업의 시장성과와의 관계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막대한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제지원이 기업의 시장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큼
- 특허박스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현재 우리나라의 R&D 관련 세제지원은 지나치게 지식재산 창출 단계에 집중되어 R&D 성과의 활용단계에는 지원이 미흡함
  - 이에 R&D 투자 성과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세제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정책효과의 판단기준
  - 현행 평가방식은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업의 시장성으로 얼마나 연결되었는지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세제지원의 규모가 결정됨
  - 그러나 세제지원의 조건으로 R&D 투자와 성과를 꼭 연동시킬 필요는 없음
-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의 관리감독 강화
  -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세액공제신청금액이 실제 R&D에 투입되었는지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
- 2018년 세법개정안과 R&D에 대한 세제지원
  - 일반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실제 R&D 활동에 사용되지 않은 부당청구액을 줄이는 대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R&D에는 보다 파격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 취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 산출 단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은 이미 확정된 결과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 않음
  - 따라서 지식재산권 취득비용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제공할 정책적 타당성이 낮음
- 공제대상 R&D 투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
  - 중소기업의 정보조사비를 공제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국내 기술혁신활동 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포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투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경제활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을 현행 10% 이상에서 현실적인 수준인 3%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여타의 생산성·안전·환경 분야의 설비 투자는 축소되었으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설비투자 조세감면 제도는 기업의 장기적인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을 세법에서 열거하는 것은 빠른 기술진보 등의 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출연금을 지원 받는 납세의무자는 출연금의 근거 법률에 따라 익금불산입 과세특례 적용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포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개발된 기술의 거래활성화를 통해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 간 기술거래를 통해 기술역량 제고 및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4년 도입 후 2015년 25억 원, 2016년 5억 원이라는 저조한 감면 실적을 나타낸 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공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필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함

○ R&D 세제지원의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

- 현재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R&D 투자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R&D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 Summary

---

# Abstract

### □ Background and Purpose

- As intellectual property is emerging as a core el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P5 is expanding tax support to activate IP creation and utilization.
-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Korea should seek ways to improve taxation support that can activate innovation activities of companies.
-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IP related tax support at home and abroad, and examine the issue of improvement of tax support system to cope with international trends.

### □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f Taxation System Related to Innovation Activities in Korea

- R&D tax credit: R&D investment for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 Investments in new growth engines and source technologies need to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because it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bring new power to economic vitality.
- Tax credit for facility investment for commercialization of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tio of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R&D expenditure to more than 3%, which is a realistic level from more than 10%.
- Tax credit for investments in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acilities
  - Tax credits for capital investment in other productivity, safety and

environmental sectors have been reduced, but the tax credit for investmen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facilities needs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to encourage long-term R&D activities.

- Tax credit for investment in productivity improvement facilities
  - Due to rapid technological advances, it is difficult to enumerate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facilities individually in the tax law, so it is desirable to comprehensively integrate them into business assets and deduct investment tax.
- Special tax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y acquisition
  - Special taxation system for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y acquisition actively trades developed technology, thereby enhancing enterprise's technical capability and applying new technology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 Tax credit for merg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
  - The tax credit system for mergers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shows a low level of exemp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deduction requirements.
- Tax credit for technology-based stock acquisition
  - If the acquiring corporation acquires the shares of the acquired corporation with all the requirements, 10% of the technological value is deducted from the corporation tax for that business year, and maintenance of the current system is necessary.
- Scale of tax expenditure of R&D tax support and stability of system operation
  - As domestic economic growth slows down and external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deteriorates, corporate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R & D investment is suggested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pand policy support for R&D investment.



<b>제1장</b>	<b>연구의 개요</b>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5
<b>제2장</b>	<b>국내 기술혁신활동 세제 현황</b> .....	7
	제1절 개요 .....	9
	제2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	12
	I. 특허조사·분석 .....	12
	II.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현황 .....	13
	제3절 특허출원·등록 비용 .....	18
	I. 특허출원·등록 .....	18
	II.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현황 .....	23
	제4절 기술취득금액 .....	26
	I. 기술취득 .....	26
	II.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	27
	제5절 기술양도·대여 소득 .....	29
	I. 기술양도·대여 .....	29
	II.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	31
	제6절 직무발명보상금 .....	34
	I. 직무발명보상 제도 .....	34
	II.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조세지원 제도 .....	36
	III. 현황 및 논의 .....	39
<b>제3장</b>	<b>해외 기술혁신활동 세제</b> .....	43
	제1절 미국 .....	45
	제2절 영국 .....	47
	제3절 프랑스 .....	48
	제4절 일본 .....	51
	제5절 중국 .....	57



<b>제4장</b>	<b>국내 기술취득활동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b> ..... 59
	제1절 R&D 세제지원에 대한 문제점 ..... 61
	I.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업의 시장성과의 관계 ..... 61
	II.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65
	III. 세제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정책효과의 효율성 증대 ..... 71
	IV. 2018년 세법개정안과 R&D에 대한 세제지원 ..... 75
	제2절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 76
	I.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포함 ..... 76
	II. 세액공제 제도 확대 ..... 78
	III. 과세특례제도 확대 ..... 85
	IV. R&D 세제지원의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 ..... 86
<b>제5장</b>	<b>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b> ..... 89
	■ 참고문헌 ..... 93
<b>부 록</b>	<b>부록1 2018 조세지출건의서</b> ..... 97



## 표 목차

<b>제1장</b>	표 1-1   지식재산 관련 활동별 세제 이슈 ..... 5
<b>제2장</b>	표 2-1   국가별 민간 R&D 규모 추이 ..... 10
	표 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6) ... 15
	표 2-3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추이 ..... 19
	표 2-4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추이 ..... 20
	표 2-5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 21
	표 2-6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심사·유지 비용 ..... 22
	표 2-7   R&D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23
	표 2-8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 사항 ..... 24
	표 2-9   거래자 유형별 기술취득 ..... 27
	표 2-10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규정(조특법 제12조 제2항) ..... 28
	표 2-11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 사항 ..... 28
	표 2-12   기업보유특허의 사업화율 ..... 30
	표 2-13   연도별 특허 및 실용신안의 국제무역수지 ..... 30
	표 2-14   기업유형별 특허 및 실용신안의 국제무역수지 ..... 30
	표 2-15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관련 세법 개정 사항 ..... 32
	표 2-16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규정(조특법 제12조 제1항, 제3항) 32
	표 2-17   R&D 및 기술이전 관련 정부 조세지출 현황 ..... 33
	표 2-18   발명 단계별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 35
	표 2-19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발명 도입율 추이 ..... 38
	표 2-20   근로소득세 적용 세율 ..... 39
<b>제4장</b>	표 4-1   기업유형별 R&D 활동 비교 ..... 64
	표 4-2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2016년 기준) ..... 73
	표 4-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변화 ..... 76
	표 4-4   2018년 일몰도래 R&D 관련 세제 조세지출규모의 추이 ..... 78
	표 4-5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현황(2011년 기준) ..... 78
	표 4-6   2018년 일몰도래 R&D 관련 세제 조세지출규모의 추이 ..... 80
	표 4-7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변화 ..... 80
	표 4-8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 81



표 4-9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 관련 조세특례 조세지출규모 비교 .....	82
표 4-10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	83
표 4-1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	84
표 4-12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추이 .....	85
표 4-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추이 .....	85
표 4-1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추이 .....	86



## 그림 목차

### 제2장

그림 2-1   R&D 조세지원규모 .....	10
그림 2-2   국내 기업의 NPE 분쟁소송 추이 .....	18
그림 2-3   IP5 특허청의 특허 출원 동향 .....	20
그림 2-4   IP5 특허청의 특허 존속율 동향 .....	21
그림 2-5   기업규모별 특허 출원 추이 .....	22
그림 2-6   지식재산 매각·이전 관련 장애요인 .....	29

### 제4장

그림 4-1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	61
그림 4-2   특허박스 도입과 세수 균형 프로세스 .....	68





---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의 연구개발(R&D)을 통한 지식재산(IP) 창출·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영국 및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은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대해 조세해택을 부여하는 특허박스 제도 등의 기술혁신활동 관련 조세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적극적 조세지원은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16년 글로벌 제약사인 Glaxo Smith Kline이 특허박스(Patent Box)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한 영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은 IP관련 조세지원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 및 세원 확보 등의 문제로 R&D와 IP 조세지원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조세지원은 우리나라의 R&D 투자규모에 비해 질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효율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은 세계 1위인데 비해, 국내 대학·출연연의 연구비지출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은 2013년 기준 1.36%로 세계 1위인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R&D를 통한 IP 활동 성과는 불확실성이 높아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혁신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특히 R&D를 통한 IP 활동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급주체의 조세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비용을 경감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R&D를 통한 IP 활동은 확산 및 전이 효과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활동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의 국내 현황 및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혁신활동의 중심에 있는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조세지원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특히 조세제도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조세제도가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조세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제2절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R&D를 통한 IP 관련 세제의 국내 현황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IP의 창출·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R&D를 통한 IP 창출·활용의 각 단계별 세부 세제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이슈를 발굴하고, R&D를 통한 IP 관련 세제에 관한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분석을 통해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조세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 관련 활동별 조세제도로서 ▲R&D 활동 단계에서의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IP 창출 단계에서의 특허출원·등록 비용, ▲IP 취득 단계에서의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IP 활용 단계에서의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마지막으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허출원·등록 비용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며,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와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도 적용대상 납세자·기술의 범위 및 적용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은 종업원 등의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표 1-1 | 지식재산 관련 활동별 세제 이슈

R&D	IP창출	IP취득	IP활용
· 특허조사·분석 비용의 R&D 세액공제 미적용 (조특법 시행령 별표6)	· 특허출원·등록 비용의 세액공제 제외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5호)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 제2항)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 대여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제3호 어목)			

한편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R&D를 통한 IP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세지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중국 등의 세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이용하여 R&D를 통한 IP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세제 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해외의 기술혁신활동 세제를 소개하고, 4장에서는 기술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제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부록에서 2018년 조세지출건의서의 내용을 담는다.



## 국내 기술혁신활동 세제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제3절 특허출원·등록 비용

제4절 기술취득금액

제5절 기술양도·대여 소득

제6절 직무발명보상금



## 제1절

## 개요

우리나라는 기술주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기술혁신활동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임을 잘 알고 이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혁신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16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2017년에는 7위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기술혁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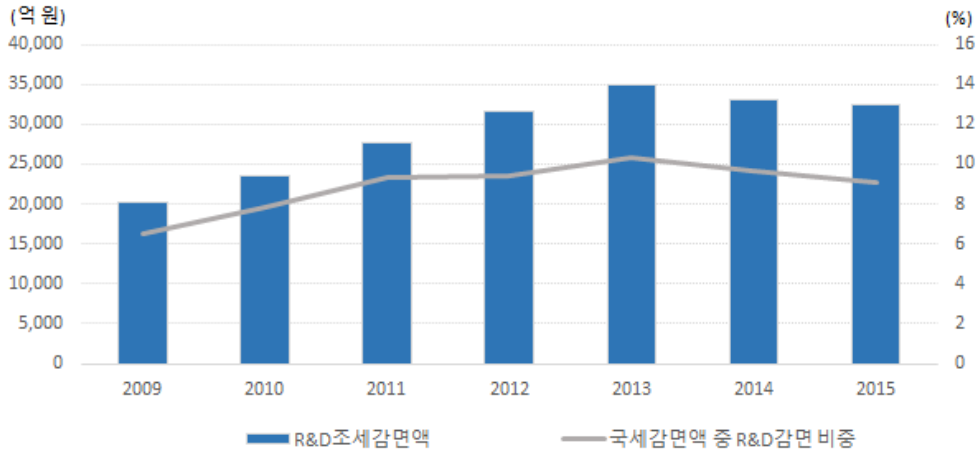
Schumpeter(1934)에 따르면 기술혁신은 제품·공정 관련 신기술을 기업에 도입하여 새로운 제품 및 생산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판매시장을 개척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OECD는 Oslo Manual(1995)을 통해 기술혁신이 구현된 기술적으로 새로운 제품·공정과 그에 내재된 중요한 기술 진보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Solow(1956) 등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술진보가 장기적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에서의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다양한 조세정책을 펼쳐왔다. 1974년 조세감면규제법 상 기술개발준비금<sup>1)</sup>의 과세특례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의 유형과 범위를 확대해 왔다. 기술혁신활동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R&D 관련 조세지원 규모는 2009년 약 2조 원에서 2015년 3.3조 원으로 약 1.6배 증가하였으며, R&D 조세지원액이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6.5%에서 2015년 9.1%로 증가하였다<sup>2)</sup>.

1) 1972년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고자 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을 허용함

2)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별

| 그림 2-1 | R&D 조세지원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별

주: 2009~2011년까지의 R&D 조세감면액은 자료 제약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지출만 합계함

이러한 조세 인센티브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간 R&D 투자는 2007년 216억 달러에서 2015년 435억 달러로 연평균 약 22% 증가하여, GDP 기준 세계 10위 국가(인도 data 부재) 중 민간 R&D 증가속도는 중국(연평균 73%)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이 지난 2016년까지 꾸준히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고, GDP 대비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sup>3)</sup>.

| 표 2-1 | 국가별 민간 R&D 규모 추이

(단위: 백만 US 달러)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증가율
한국	21,608	24,809	22,815	21,114	27,239	33,182	36,786	40,991	45,594	43,469	22%
미국	227,110	246,741	258,691	235,306	233,456	250,873	258,572	277,974	295,422	309,653	15%
중국	26,007	34,321	47,658	60,935	74,785	99,368	120,796	142,641	159,789	170,030	73%
일본	114,468	117,173	131,427	127,237	135,777	152,890	151,520	129,001	127,428	112,317	11%
독일	50,359	57,322	65,562	61,575	60,756	68,898	67,162	69,276	73,752	64,590	14%
영국	19,296	22,985	21,411	17,945	17,943	20,116	19,457	20,859	24,191	23,656	14%
프랑스	24,881	28,120	30,570	31,101	30,800	34,519	33,070	34,632	35,380	29,870	13%
이탈리아	8,535	10,485	12,774	11,783	11,608	12,417	11,667	12,591	13,663	12,285	16%
캐나다	13,112	13,755	14,253	12,788	13,924	15,747	15,373	14,713	14,144	10,709	9%

자료: 특허청, 2017년 지식재산백서, 2017

3) 특허청, 2017년 지식재산백서, 2017.

이러한 현상은 조세지원정책이 기술혁신활동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급속한 기술변화를 수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기술혁신활동에 요구되는 중요한 요인은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R&D를 통한 IP 활동의 각 단계별로 기술혁신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D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복 R&D 및 미활용 특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특허동향분석이나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IP창출 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IP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명세서를 정교하게 작성하고 특허의 출원·등록을 통해 특허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IP취득 단계의 경우 기술개발에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IP취득을 통한 신속한 우량 신기술 개발이 중요하므로, IP취득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량 신기술 개발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양도·대여 단계에서는 시장가치가 더욱 높은 기술을 개발하고 창출할 유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R&D를 통한 IP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연구자 및 개발자의 인센티브를 제고해야 한다.

기술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노력 중 조세제도의 개선이 수반될 때 기술개발에 따른 세후소득의 증가 효과로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R&D부터 IP활용에 이르기까지 연관되는 조세제도로는, ▲R&D 특허조사·분석 비용, ▲특허출원·등록 비용, ▲기술취득금액, ▲기술양도·대여 소득, 마지막으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한 조세제도가 있다.

본 장에서는 기술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기술혁신활동 세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 특허조사·분석 비용

### I 특허조사·분석

우리나라의 R&D와 관련하여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우선적으로 중복 R&D 및 미활용 특허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특허·기술의 조사·분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국가 R&D 사업의 연구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 R&D 과제선정 시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정부 R&D 부처에 약 4만개의 과제를 지원하였다.

특허조사·분석은 과거부터 장기간 축적된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여 R&D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특허동향조사와 선행기술조사로 구분된다. 우선 특허동향조사는 전반적 기술동향 및 주요 R&D 주체의 R&D 동향 파악과 R&D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선행기술조사는 중복연구 방지를 목적으로 R&D 과제의 선행문헌 공개 여부를 조사·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7).

특허조사·분석은 타인의 독점권 침해 여부 및 공개기술 정보, 유사 R&D 공개 여부, 유사업종의 경쟁사 R&D 현황, 특정기술 관련 발명자 그룹의 변화, 타인의 특허권의 정당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 기업의 경우 당사 제품이 타인의 특허권 침해 시 발생가능한 손해배상이나 해당제품의 판매금지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R&D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특허조사·분석을 통해 권리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허정보는 발명과정의 직접적 산물이므로 기술혁신의 경쟁적 측면을 제시하고, 발명활동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객관적 기술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박규호, 2005).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특허정보는 R&D 과정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안상훈 등(2007)은 국가R&D에서 특허기술동향 조사지원을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비용이 10% 증가 시 특허출원이 1.25% 증가한다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특허조사·분석이 R&D의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특허청이 2015년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지원을 받은 과제의 과제당 창출 특허수와 우수특허 비중이 사업지원을 받지 않은 과제에 비해 각각 72%, 35%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2016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과제에 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결과 입력장치 인식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음성인식 관련 특허출원이 발견되자, 해당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과제기획 방향을 음성인식과 동작인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특허의 조사·분석을 위해서는 특허법, 특허 데이터베이스(DB) 및 특허 검색식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검색 및 특허전문가에게 관련 전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영 환경과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인해 R&D를 거쳐 사업화하는 기간의 단축이 주요 경쟁력이 되고, R&D 시설은 급속히 진부화되면서 특허조사·분석도 외부위탁이 증가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7).

## II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현황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R&D 기획 단계에서 특허조사·분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민간 R&D 주체가 자체 재정으로 특허조사·분석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특허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보다 정교한 조사·분석이 수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특허조사·분석을 외부에 위탁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통해 특허조사·분석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R&D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규정되

어 있다. R&D 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산출하여 합산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 세액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①)에 중소기업의 경우 30%(②)(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 이외 중견기업 및 대기업: 20%)에 해당비용의 매출액 대비 비중(③)에 3을 곱한 비율(10% 한도, 코스닥상장중견기업:15%)을 더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①×(②+③×3)). 또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세액은 증액법과 총액법 중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다. 증액법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세액을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에 증가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중소기업의 경우 50%(중견기업: 40%, 대기업: 25%)를 곱하여 산출하는 반면, 총액법은 당해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중소기업의 경우 25%(중견기업: 8%, 대기업(2%한도): 해당비용의 매출액 대비 비중×½)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주제인 R&D 세액공제 대상과 관련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R&D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과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활동으로 정의되고, 인력개발은 임·직원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구체적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서 언급하는 별표6(표 2-2)에 제시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과 위탁·공동연구개발, 종업원등의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 고유디자인개발,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및 공업·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인력개발은 위탁훈련비와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비,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사내기술대학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표 2-2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6)

구분	비용
연구 개발	<p><b>가. 자체연구개발</b></p> <p>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p> <p>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p> <p>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p> <p>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p> <p>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p> <p>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p> <p><b>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b></p> <p>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p> <p>나) 국공립연구기관</p> <p>다) 정부출연연구기관</p> <p>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p> <p>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p> <p>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p> <p>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p> <p>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p> <p>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p> <p>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p> <p><b>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b></p> <p><b>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b></p> <p><b>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b></p> <p><b>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b></p> <p><b>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b></p>

구분	비용
인력 개발	<b>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b>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 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의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b>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b>
	<b>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것</b>
	<b>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b>
	<b>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 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b>

이 중 자체연구개발비는 크게 ①연구소·전담부서의 직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 관련 인건비, ②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③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탁·공동연구개발비는 ①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종 기업 등에 과학기술 분야 관련 연구개발을 위탁하거나 공동수행 시 발생 비용과 ②대학 교수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 위탁 시 발생 비용을 포함한다. 한편, 기술정보비는 과학기술분야 ①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②대학 교수, ③외국에서 산업재해예방 시설산업 및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에 일정 기간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된 산업기술 관련 자문료로 구성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인 특허조사·분석 비용과 연관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특허조사·분석 비용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 하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인력이 특허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내부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특허조사·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별표6 나목의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특허조사

· 분석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연구개발에 대해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과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특허조사·분석 비용을 기술정보비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의 정의상 기술정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원 및 교수, 외국인기술자와 같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허조사·분석 비용을 기술정보비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관해서는 법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유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도 적격 R&D 활동에 대해 법령중심으로 설명할 뿐, 납세자입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적격 R&D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학수 등, 2017). 이러한 법규정의 모호성은 R&D 주체에게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특허조사·분석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이 된다.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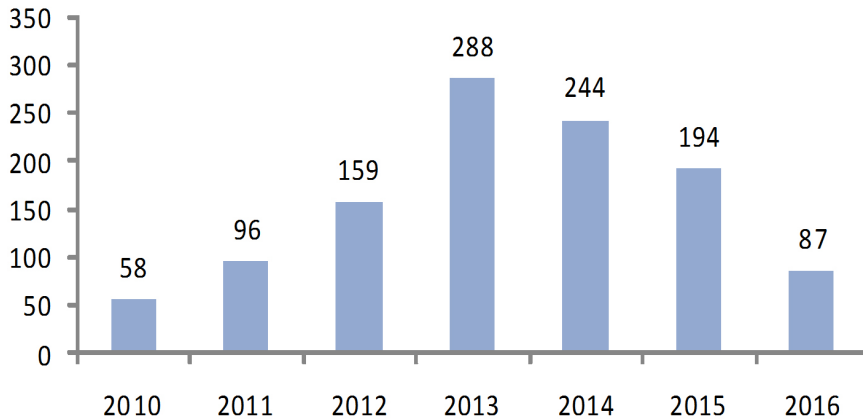
## 특허출원·등록 비용

### I 특허출원·등록

2010년대 해외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사례를 경험하면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었다. 소위 제조활동 없이 특허만을 매입하여 제조기업을 소송으로 위협하는 특허괴물(NPE)의 특허침해소송은 2010년 58건에서 2013년 288건까지 5배 가까이 증가하여 국내 기업들이 IP관리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2| 국내 기업의 NPE 분쟁소송 추이

(단위: 건수)



자료: 특허청, NPE 동향 연차보고서, 2017.

해외 기업의 침해소송 규모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체로 확대할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건수는 1심을 기준으로 2010년 184건에서 2013년 1,681건으로 9배 가량 증가하다가, 최근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적극적 대응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 침해소송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표 2-3 |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추이

(단위: 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침해 1심	184	418	1,371	1,681	966	785	381
침해 2심	54	47	56	100	91	103	174
대법원	14	15	9	17	17	15	26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HTTP://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 특허청, 2017 지식재산백서 재인용, 2017.

특히 2000년대 이후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도 지식재산 분쟁 증가와 관련이 있다. I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용이해지는데 반해 침해 판단은 복잡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이 IP 분쟁 위험이 증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IP 관리가 기업의 생존에 핵심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은 기술의 법적 보호를 위해 특허의 출원·등록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허출원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자가 국가를 상대로 발명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고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허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 사항을 특허청의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허 이외의 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서도 출원과 등록은 유사한 의미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특허 및 디자인, 상표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의 출원 건수는 2010년 170,101건에서 2016년 208,830건으로 연평균 3.5% 증가하였으며, 디자인과 상표는 각각 연평균 2.3%와 7.0% 증가하였다. 또한 등록의 경우, 특허등록 건수는 2010년 68,843건에서 2016년 108,875건으로 연평균 7.9% 증가하였으며, 디자인과 상표는 각각 연평균 8.7%와 14.4% 증가하였다.

4)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도전에 직면하다(互联网知识产权保护面临挑战)', 2015.12.3.

[표 2-4]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추이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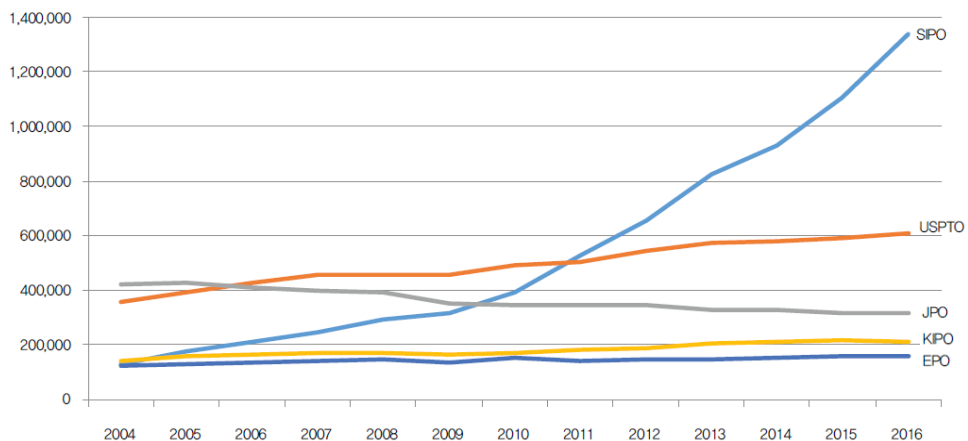
연도	출원				등록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2010	170,101	13,661	57,187	121,125	68,843	4,301	33,697	53,136
2011	178,924	11,854	56,524	123,814	94,720	5,853	42,185	71,255
2012	188,915	12,424	63,135	132,522	113,467	6,353	46,146	77,903
2013	204,589	10,968	66,940	147,667	127,330	5,959	47,308	100,094
2014	210,292	9,184	64,345	150,226	129,786	4,955	54,010	99,791
2015	213,694	8,711	67,954	185,443	101,873	3,253	54,551	114,747
2016	208,830	7,767	65,659	181,606	108,875	2,854	55,602	119,255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동향, 2017.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해왔지만, IP5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WIP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및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IP5 특허청에서 출원된 특허는 2016년 총 2,630,638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출원량은 2016년 1,338,503건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하여 세계 출원량의 42.8%를 차지한 반면, 한국의 출원량은 2.3% 감소하여 IP5 국가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출원일 이후 특허 유지 비율을 의미하는 존속율의 경우, 특허가 20년 동안 유지되는 비율은 미국 및 일본, 중국, 유럽에 이어 한국이 가장 낮은 13%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존속율 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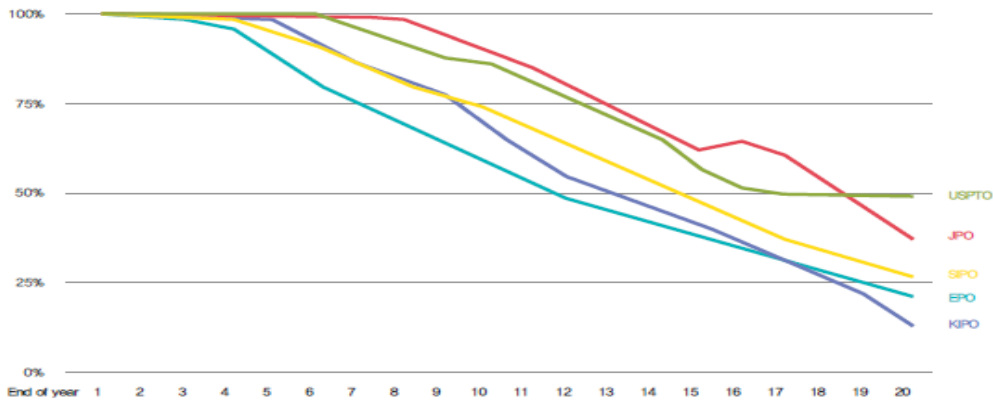
[그림 2-3] IP5 특허청의 특허 출원 동향

(단위: 건수)



자료: 특허청, 2017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 2017.

|그림 2-4| IP5 특허청의 특허 존속율 동향



자료: 특허청, 2017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 2017.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제약요인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감면 ▲해외출원 정보제공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처벌방안 ▲컨설팅지원 ▲공동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표 2-5|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단위: %)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감면	63.70	46.90	59.30	64.30
해외 출원 관련 정보제공	48.00	55.80	47.40	47.90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55.80	69.50	52.20	55.80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공동 단속	53.30	62.20	53.40	53.10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지식재산권의 국내 및 해외 출원·심사·유지를 위한 기업의 연간 평균 지출액은 8,821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각각 4억 5,658만 원과 8,950만 원, 7,989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2-6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심사·유지 비용

(단위: 만 원)

	국내		해외		합계
	출원·심사1)	유지2)	출원·심사	유지	
전체	1,904	2,986	2,833	1,098	8,821
대기업	5,293	2,009	30,149	8,207	45,658
중견기업	1,369	1,136	4,893	1,552	8,950
중소기업	1,871	3,164	2,094	859	7,989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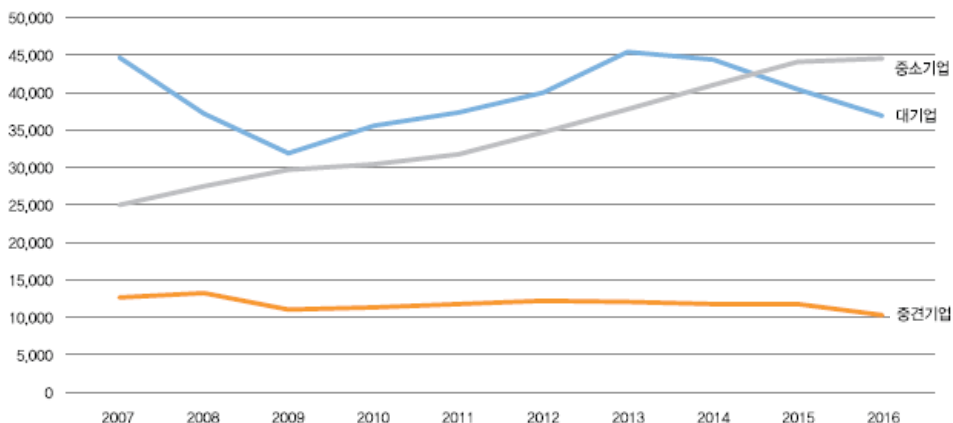
- 1) 출원·심사 비용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수수료, 심사 청구료, 번리사 비용, 결정계 심판(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에 소요된 비용
- 2) 유지비용은 산업재산권의 등록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금액(등록료와 연차료)

한편 지식재산 출원·등록 비용 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응답률은 64.3%로 대기업의 응답률 4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이 출원·등록 비용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특허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하락-증가-하락의 변동을 보였고, 중견기업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 중소기업도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P 출원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IP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원·등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이 필요가 있다.

| 그림 2-5 | 기업규모별 특허 출원 추이

(단위: 건수)



자료: 특허청, 2017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 2017.

## II 특허출원 · 등록 비용 세액공제 현황

글로벌 환경에서 IP소송 위협으로부터 IP를 보호하기 위해 IP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출원 · 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하여 IP의 출원 · 등록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IP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출원 · 등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IP 출원 · 등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규정되어 있다.<sup>5)</sup> 현행법에서 구체적인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6(표 2-2)에 제시하면서, 특허출원 · 등록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통해 R&D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R&D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에는 ①일반 관리 · 지원활동 ②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 품질시험 ③반복적 정보수집 활동 ④경영 효율성 조사 · 분석활동 ⑤특허권의 신청 · 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⑥자원 매장량 · 위치확인 등의 조사 · 탐사활동 ⑦수탁연구활동이 명시되어 있다.

【표 2-7】 R&D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 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 · 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 · 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5) R&D 세액공제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R&D 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합산한다.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 세액은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①에 중소기업의 경우 30%②(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 이외 중견기업 및 대기업: 20%)에 해당비용의 매출액 대비 비중③에 3을 곱한 비율(10% 한도, 코스닥상장중견기업:15%)을 더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①×(②+③×3)). 또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공제 세액은 증액법과 총액법 중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다. 증액법은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공제 세액을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에 증가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에 중소기업의 경우 50%(중견기업: 40%, 대기업: 25%)를 곱하여 산출하는 반면, 총액법은 당해연도의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에 중소기업의 경우 25%(중견기업: 8%, 대기업(2%한도): 해당비용의 매출액 대비 비중× $\frac{1}{3}$ )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982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14조 별표6에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당시에는 특허출원·등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1999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할 때에도 특허출원·등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는 여전히 명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아 사후관리 시 세금을 추징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를 R&D 활동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R&D의 개념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며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특허출원·등록 비용을 제외하도록 명시한 것은 특허의 출원·등록 과정이 R&D 활동과 별도로 구분된다는 전통적인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8】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 사항

년도	개정 내용
1982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시행령 제14조 별표6에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 규정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적용여부 미규정)
199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시행령 제8조 별표5에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규정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적용여부 미규정)
20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배제 명시화

그러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특허출원·등록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2017년 특허청이 건의한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중소기업을 돕는 수단으로 R&D 관련 지원제도가 유용한 정책수단이지만, 세액공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게 위해서는 공제율이 건의된 공제율 25% 보다 훨씬 높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세액공제는 도입되지 못했

다. 다만 전문가 집단의 AHP 설문분석에 기초하므로, 설문응답 결과 간 편차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과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제4절

## 기술취득금액

### I 기술취득

기술의 복잡해지고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자체 R&D 투자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실패위험이 더욱 증가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시장 선점이 기업의 경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술의 진부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한 공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자체 R&D 보다는 자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취득·개발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범위한 기술의 융복합을 본질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술취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자 유형별로 기술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대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건수가 3,9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취득한 건수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640건과 4,228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기술은 대기업 간에만 거래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기술은 중소기업 간에만 거래되는 현상에 기인할 수 있다. 한편 재정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을 취득한 건수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89건과 94건이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을 취득한 건수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89건과 282건이었다. 이는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회사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통계적 결과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을 다수 취득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 표 2-9 | 거래자 유형별 기술취득

(단위: 건수)

취득주체	이전주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	합계
		대기업	2016	3,973	10	87	11
	2017	1,300	28	31	11	75	1,445
중견기업	2016	489	1,517	212	32	34	2,284
	2017	94	533	129	10	40	806
중소기업	2016	889	2,379	3,640	3,831	1,642	12,381
	2017	282	896	4,228	4,097	1,402	10,905
개인	2016	52	8	1,150	1,118	444	2,772
	2017	31	5	1,145	1,158	520	2,859
기타	2016	121	15	220	186	8,264	8,806
	2017	84	45	309	129	5,811	6,378
합계	2016	5,524	3,929	5,309	5,178	10,475	30,415
	2017	1,791	1,507	5,842	5,405	7,848	22,393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동향, 2017.

## II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기술이 복잡해지고, 진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의 기술취득은 불가피하나, 자체 R&D를 수행하지 않고 기술취득을 하더라도 비용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술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취약하여 기술취득 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다만 세액공제금액은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한다.

그러나 기술취득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선택이지만 동일한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자체 R&D를 수행했다면 25%라는 높은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을 고려할 때, 조세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이 높고 형평성과 실효성이 낮은 조세지원이라 할 수 있다.

| 표 2-10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규정(조특법 제12조 제2항)

<p>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lt;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li> <li>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li> </ol>
--

2000년에 신설될 당시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공제비율은 10%이고, 중견·대기업의 공제비율은 3%로서 취득대상 기술에는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공제비율은 7%로 축소되었다. 2005년 개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기술취득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0년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기술취득 세액공제가 특수관계자 간에 악용되고,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16년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 시 5%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현재의 조항이 마련되었다.

| 표 2-11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 사항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신설 - 공제비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2002년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공제비율은 7%로 축소
2005년	특수관계자 간 기술취득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010년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016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으로 한정
2016년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확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 시 5% 세액공제
2017년	일몰기한 도래로 폐지

이와 같이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비율 및 거래기업 간의 관계, 공제대상 기업, 공제대상 기술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된 조세지원 정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래된 역사에 비해 조세지원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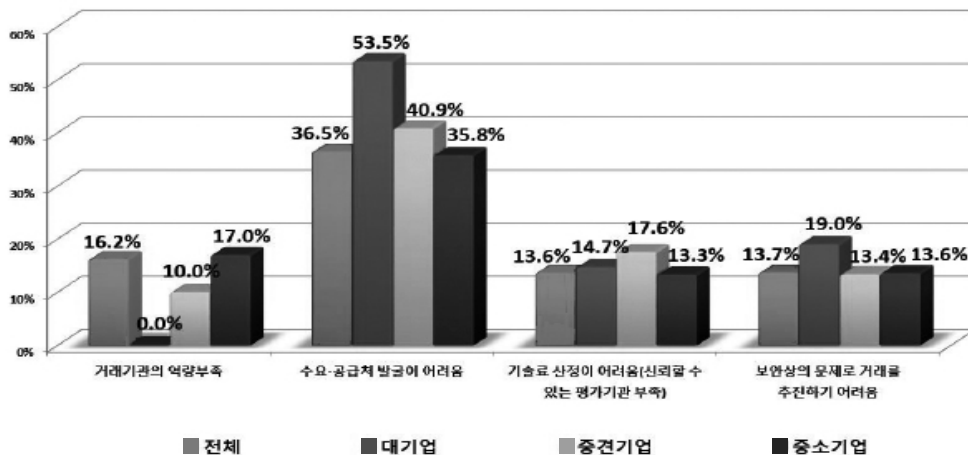
## 제5절

## 기술양도 · 대여 소득

## I 기술양도 · 대여

기술취득과 기술양도 · 대여는 기술 거래의 양 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거래 비용이 높고, 이로 인해 기술거래 가격이 증가하게 되어 기술거래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0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36.5%가 지식재산 매각 · 이전과 관련한 장애요인으로 수요 · 공급처 발굴의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특히 이러한 문제는 대기업에서 더욱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거래기관의 역량부족과 신뢰성 있는 평가기관의 부족도 기업들의 지식재산 매각 · 이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 그림 2-6 | 지식재산 매각 · 이전 관련 장애요인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7.

이와 같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기술거래시장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0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보유특허 중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정 개선에 활용하거나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관에게 이전한 특허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업화율이 전체적으로 58.9%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사업화율은 34.2%로 중견기업의 사업화율 71.2%와 중소기업의 사업화율 75.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2】 기업보유특허의 사업화율

기업구분	보유건수	사업화건수	사업화율
전체	38,153건	22,481건	58.9%
대기업	14,317건	4,893건	34.2%
중견기업	10,033건	7,139건	71.2%
중소기업	13,803건	10,449건	75.7%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7.

우리 기업의 특허권 등의 국내 거래에 관한 자료는 사적 거래의 영역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대안적으로 한국은행이 산출한 특허·실용신안의 무역수지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특허·실용신안의 무역수지 적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서 각각 12.2억 달러와 0.1억 달러 적자로, 대기업의 적자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연도별 특허 및 실용신안의 국제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
수지	-16.9	-28.9	-44.8	-33.7	-25.8	-19.9	-13.8
수출	30.1	24.8	18	30.1	39.6	41.5	45.6
수입	46.9	53.7	62.7	63.9	65.4	61.3	59.4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2018.2.20.

【표 2-14】 기업유형별 특허 및 실용신안의 국제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기업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수지	-13.9	-12.2	-0.1
수출	45.5	42.7	1.2
수입	59.4	54.8	1.3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2018.2.20.

따라서 지식재산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시장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한 감축효과로서 지식재산의 양도·대여 시 조세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단계에서는 창출된 IP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IP의 대여를 통한 로열티 소득이나 IP가 내재된 제품·서비스의 판매와 생산 공정의 이용에 따른 소득에 특허소득 공제라는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양도 단계에서 IP의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핵심우량 IP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sup>6)</sup>.

## II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우리나라의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은 본격적으로 민간주도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추진했던 1982년에 R&D 투자 조세지원 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기술이전 활성화 정책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R&D 자체뿐 아니라, R&D의 결과물인 기술의 이전을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R&D 투자세액공제에 더하여 R&D의 성과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처럼 제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sup>7)</sup>, 기술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은 2006년부터 폐지되었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재계는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정부에 바라는 기업현장 애로 100선 건의'를 통해 IP 조세지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국제적으로도 IP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박스를 도입하는 추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이전 과세특례의 재도입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동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까지 확대하였다.

6) IP거래 시 양도자는 IP양도소득세를 IP가격에 반영하여 IP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IP양도소득세가 높아질수록 IP거래의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음

7) 2003년부터 기술이전 과세특례의 폐지에 대한 논리로 재정경제부가 비판을 제기함

**| 표 2-15 |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관련 세법 개정 사항**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82년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내국인 대상 양도·대여소득 100% 세액감면
1989년	소득공제 대상을 내국인 대상 기술비법의 양도·대여까지 확대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소득공제 축소 및 일몰제도 도입 - 양도·대여소득의 50% 세액감면
2004년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술비법 제공 관련 조세지원 배제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 연장(2년)
2005년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 제도 폐지
2014년	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재도입 - 50% 세액감면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기술대여 소득 세액감면 허용 - 중견기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25% 세액감면
2016년	기술대여뿐 아니라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으로 한정
2017년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서 특허권 관련 손실 금액 차감

현행 기술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 각각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과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표 2-16 | 기술양도·대여 소득 세액감면 규정(조특법 제12조 제1항, 제3항)**

<p><b>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b>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lt;신설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gt;</p> <p>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lt;신설 2014.12.23., 2015.12.15.&gt;</p>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비율 및 거래기업 간의 관계, 공제대상 기업, 공제 대상 기술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된 조세지원정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래된 역사에 비해 조세지원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우선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특허권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25%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규정 모두 대기업에 의한 이전이나 특수관계인 간의 이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조세혜택의 대기업 편중에 대한 우려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감면혜택을 적용한 결과, 제도 도입 후 3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도 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의 규모는 2억 원에 불과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표 2-17] R&D 및 기술이전 관련 정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2012 (실적)	2013 (실적)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567	28,850	27,860	28,158	20,802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552	1,600	2,012	1,509	1,46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205	118	70	41	3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6	20	15	8	9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819	830	600	244	16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	9	2	9	14	2
R&D 및 기술이전 세액감면 합계 (A)	31,523	34,983	33,093	32,540	25,209
국세감면 (B)	333,809	338,350	343,383	359,017	365,077
R&D 및 기술이전 세액감면 비율 (A/B)	9.4	10.3	9.6	9.1	6.9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별

우리나라의 현행 R&D 관련 조세지원 제도는 R&D 활동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정부차원에서 공유(risk sharing)하여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 투자 조세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 동안의 R&D 활동의 양적 증가에는 기여해 왔으나 R&D의 효율성 등 R&D 활동의 질적 성장에서는 제한적 성과를 보여 왔다.

제6절

## 직무발명보상금

### I 직무발명보상 제도

#### 1.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이란 ①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②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③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종업원에게는 지식재산권 권리 귀속 및 R&D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고 기업에게는 R&D 투자 및 인프라 제공의 이익을 돌려주는 종업원과 기업 간의 합리적 이익조정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종업원의 물질적 보상 및 R&D 의욕 향상과 기업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안정적 실시 및 기술축적과 이윤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 2.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을 바탕으로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sup>8)</sup>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법, 독일의 종업원발명법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에 반해 사용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시설과 자금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려면 당사자 간 계약, 근무규정 기타 약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상조치가 요구된다. 종업원이 특허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금전적 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다.

【표 2-18】 발명 단계별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구분	내용
발명(제안)보상	발명보상은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 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출원유보보상 <sup>8)</sup>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출원보상	출원보상은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원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
등록보상	사용자가 승계 받은 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
실시(실적)보상	사용자가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 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상
자사실시보상	직무발명을 발명자가 속한 회사에서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
타사실시보상	직무발명을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타 기업에게 이전하고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처분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보상
기타보상	이 외의 보상에는 출원발명의 심사청구 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로 하였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음

- 8) 특허법 제33조 제1항: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9) 발명진흥법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내부 실정에 따라 비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즉 금전보상으로는 통장입금, 현금, 상품권, 복지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비금전적 보상으로는 유급휴가, 승진, 해외연수, 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선택권부여 등으로 지급된다.

## II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조세지원 제도

### 1. 개요

직무발명 확산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지원에 대한 근거를 입법화하고 있다(발명진흥법 제40조).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지원으로서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는 대폭 축소되어 비과세의 실효성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법인세법상 비용처리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 2.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하는 제도이며, 연구 인력의 창조적 발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의 우수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1979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1980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에는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하였으며, 우수발명은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으로 정의하였다. 1994년 3월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내용이 발명진흥법에 포함 되면서 우수발명에 대해 규정하는 근거법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1994년 발명진흥법을 제정, 2009년 일부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 시행하면서 발명을 장려하고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재직 시 받는 직무발명은 근로소득(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 어목),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동법 동조 제5호 라 목)에 해당하였다.

2016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및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하여 비과세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 즉 연 3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퇴직 후 지급받은 경우)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법인 대표자가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가지 급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악용하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편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및 R&D 세액공제,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유도하였지만, 기획재정 부는 2017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였다.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시행 2017.1.1.] [법률 제14389호, 2016.12.20, 일부개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범위 <input type="checkbox"/>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 유권해석(2002.12.30.)에 따라 특허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범위 보완 <input type="checkbox"/>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 원 이하의 보상금

자료: 국세청, 2017년 개정세법 해설, 2017.

이에 따라 기술연구개발 활동과 기술사업화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율은 65%(17)로 87%인 일본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율이 대폭 증가(대기업: 84.4%(14) → 92.6%(17), 중견기업: 75.0%(14) → 92.6%(17))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증가 추세(중소기업: 41.1%(14) → 60.2%(17))이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표 2-19】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발명 도입율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기업전체	51.5	55.6	60.2	65.0
대기업	84.4	77.7	91.7	92.6
중견기업	75.0	71.6	86.1	91.6
중소기업	41.1	46.2	48.8	60.2

자료: 특허청, 2017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 2017.

이러한 논의에 따라 2018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직무발명보상금의 특징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분류에 따른 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자신이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기업에 승계시키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발명에서 연관된 근로소득으로서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고 그 외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으며, 소득 분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책정되고 있다.

기타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근로소득은 소득 금액의 합계액 즉,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 때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에만 과세되는 반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된 때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타소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 '외'의 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한다(동법 제20조제1항).

### III 현황 및 논의

####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의 문제

#####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 의하면, 봉급·급료·임금·세비(歲費)·연금(年金)·상여(賞與)·퇴직급부(退職給付) 및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必要經費控除) 또는 특별공제(特別控除)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의 계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한다.

| 표 2-20 | 근로소득세 적용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 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5억 원 초과	3,760만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38%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 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소득세법 제21조)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현재는 소득에서 80%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20% 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양자의 차이점은, 근로소득은 계속 반복의 행위를 고용자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의 성격이며, 기타소득은 일시적 제한적인 행위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 2)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

직무발명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사용자)에서 일하는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하며, 이때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형태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으며,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각 기업 등은 내부 실정과 종업원 등의 보상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연수·유학, 안식년, 학위 과정 지원, 희망 직무 선택권 부여 등 다양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등이 될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직무발명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2014누29 판결).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는 발명자이며, 직무발명보상금이 지식재산권의 승계·양도의 대가로 지급되는 형태를 가지고, 계속적·반복적 지급이 된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소득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sup>10)</sup>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시적 제한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처럼 일정하게 정해진 계속 반복적인 근로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발명이라는 일시적이 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을 정의하면서 산업재산권 관련소득을 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6.12.20.>

1.-6. 생략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이하 생략

---

산업재산권의 양도, 대여 등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도 등록·출원 등에 대한 보상은 일시적,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실시보상의 경우에도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대여에 대한 대가와 유사하므로 특별히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의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현재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이었지만, 세법개정에 의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으로 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또한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

10)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주요 판례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사례’[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과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542 판결(심리불속행)], ‘한국화학연구원사례’[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3 판결과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566 판결(심리불속행)]이 있다.

##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문제

###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의 적정성

2016년 개정에서 처음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된 실시 및 처분보상은, 전체 해당기업의 건당 실시 및 처분보상금이 최근 급격하게 상향되고 있는 경향에 있으므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 한도인 300만 원은 직무발명의 의지를 경감시킬 우려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시 및 처분 보상금액은 우량특허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므로, 해당 보상금을 많이 수령한 발명자에게 비과세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우량 특허의 창출을 촉진하는 유인으로서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건당 실시 및 처분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범위의 축소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원동력이 될 우량특허의 창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2018년 7월, 기획재정4부에서 소득세법시행령을 발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이는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 및 중소기업은 성과평가나 승진 등의 인사고과 체계의 미비로 임직원의 직무발명을 통한 기여활동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못하여 비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금이 유일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점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해외 기술혁신활동 세제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일본

제5절 중국



## 제1절

## 미국

미국의 R&D 세액공제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는데, RRC는 이전 4년 동안 회사의 연간 총매출액과 연구비용 및 총수입액의 비율, ASC는 지난 3년 동안 요건을 갖춘 평균 연구비용의 50%를 기준금액으로 하며, 기초 연구를 위한 공제는 (a)두 개의 최소 기초 연구 중 큰 것 (b)기업이 고정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한 대학에게 제공하는 비연구의 감소를 반영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납세자 요건(중소기업요건 등)은 연평균 총수입액이 5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저한세(AMT liability) 세액공제로 상쇄할 수 있다. 세액공제 이전의 3년 기간의 평균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요건”은 비상장된 회사, 파트너십 또는 독점 소유권이어야 한다. 총수입액을 결정함에 있어, section 38(c)(5)(C)는 다음을 제공하는 448(c)(2) 및 (3)의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적용한다. (i)52조(a) 및 (b) 또는 414(m) 또는 (o) 항에 따라 단일 고용주로 취급되는 모든 사람은 1인으로 취급된다. (ii)중소기업이 총3년 기간이 되지 않았다면, 총수입액의 요건은 해당 법인이 존재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iii)짧은 과세연도의 경우, 총수입액은 짧은 기간의 총수입액에 12를 곱한 다음 그 결과를 짧은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다. (iv)모든 과세연도의 총수입은 해당 연도에 이루어진 환급 및 공제액에 의해 감소한다. 또한 파트너십 또는 S기업의 경우 총영수증 및 총수입액 테스트는 해당 기업과 파트너 또는 주주 모두가 과세연도를 충족해야 한다.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소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납부 시에 세액공제를 미화 25만 달러를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파트너십 또는 S법인이 아닌 소기업의 경우, 선출된 금액은 다른 방식으로 이월될 해당연도의 세액공제로 제한된다.

스타트업 기업은 과세연도에 5백만 달러 미만의 총수입액을 보유한 소기업, 과세연도로

끝나는 5년 과세 기간 이전에 총수입액이 없는 경우이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아닌 중소기업(단독 소유 등)은 납세자가 모든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총수입액을 고려해야한다. 기업 및 파트너십의 경우, 총수입액 및 세액공제 한도는 통제된 그룹(controlled group) 단위로 적용된다.

R&D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 수행에 사용되는 물품은 공제 대상. 섹션 41(b)(2)(C)는 토지 또는 토지개선 및 건물 및 장비와 같은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유형자산으로 공급을 규정한다. 간접비, 리스 비용 및 라이선스 비용은 유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는 공급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직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한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회사가 취득한 비감가상각 유형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공급 장치가 신용 등급을 부여한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의 수행에 사용되는 회사가 취득한 비감가상각 유형자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제2절

## 영국

영국은 회사가 R&D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이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가(state)의 지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조건의 지원을 청구할 수가 없다.<sup>11)</sup> 다른 유형의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업이 청구 할 수 있는 R&D 지출은 보조금의 액수만큼 줄어든다.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받은 회사는 R&D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지원금을 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 회사가 3년 동안 20만 유로 미만의 지원을 받는다면 De Minimis 규정에 따라 De Minimis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De Minimis 지원을 하지 않는 프로젝트에서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를 청구 할 수 있다. 이는 De Minimis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를 충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규칙은 회사 비용이 아닌 프로젝트 비용에만 적용되며, 직접 EU 기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적절한 경우 지불 가능한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에서 자체 지출에 대한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를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EU 보조금에 대한 세금면제는 대기업 제도(Large Company scheme)와 RDEC 하에서 청구 할 수 있다. 대기업 제도에 따른 보조금 축소는 없다.

11) 중소기업은 500명 미만의 직원과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사 또는 조직이다. (a)1억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 매출 (b)8,6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대차 대조표(이 정의는 2008년 8월 1일부터 R&D 지출에 적용됨)

### 제3절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지식재산의 규모 및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과학적 접근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는 R&D 비용에 대해 광범위하게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일반 조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부속서 III의 제49조 제1항은 기본 연구, 응용 연구 및 실험 개발이라는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세액공제에 적합한 R&D 활동을 정의하는데, 국제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D 활동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R&D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참신성: R&D 활동이 제품 및 프로세스에 포함된 지식을 포함하여 구조화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한다. ②창의성: 지식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이 R&D 활동의 목표 중 일부이어야 한다. ③불확실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식별 가능한 지식으로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④체계성: R&D 활동이 수행절차를 계획하고 그 진행과 결과를 기록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⑤양도 및 재생산 가능: R&D 활동은 취득한 새로운 지식의 이전 및 사용, 결과의 복제가 가능해야 한다.

프랑스의 R&D 세액공제에서는 특허를 R&D 활동의 주요 지표로 사용한다. 실무적으로 특허 심사 시 참신성과 독창성, 산업활용성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특허의 등록 및 연장이 R&D 세액공제의 자격 평가 시 창의성 지표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알려진 최신 기술과의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창의성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가 R&D의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보고서와 시험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R&D 활동과 특허 출원이 항상 병행되지는 않지만, R&D 관련 특허를 세액공제의 적격성 분석 방법에 활용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일반조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244조 quater B II a-는 R&D 세액공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R&D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비용으로 R&D 활동

관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운영비, 외부발주된 R&D 비용, 산업재산권 보호 비용, 표준화 비용, 기술조사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산업재산권 보호비용에는 발명품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 즉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식물품종 증서와 관련된 비용만 포함되며, 디자인, 모델, 상표 및 라이선스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조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244조 quater B II e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보호비용은 크게 ①R&D 활동을 위해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지원과 ②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유지 비용, ③산업재산권의 방어 비용, ④산업재산권 관련 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가차원의 산업화를 위한 관점이 아닌 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한 특허 또는 식물품종증서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EU,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에 기반한 활동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특허 및 식물품종증서에 대한 출원 및 유지비용은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INPI(국립 산업재산권연구소)의 변리사 및 대리인에게 지불한 수수료, 특허출원담당 요원, 번역 수수료, 특허 부여 및 발명의 보호를 보장하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INPI의 이익을 위해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 식물품종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지 목적에서 프랑스 및 해외의 변리사 및 특허감독기관에 지불한 연간 보수 및 유지수수료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용은 특허 실시기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 및 식물품종증서의 방어 비용은 변호사 및 사법 전문가의 보수와 법원 비용을 포함한 기업의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뿐 아니라, 특허방어를 위한 회사 내부인력의 인건비도 포함된다. 특허 및 식물품종증서 관련 비용이 R&D 활동과의 연계성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산업재산권 관련 보험료는 분쟁 관련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비용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기부금의 경우 연간 €60,0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은 회사 소유의 특허 또는 식물품종증서와 관련하여 소송차원에서 부과되는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 및 전문가 보수 등의 법적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및 기부금이다. 회사의 특허 및 식물품종증서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법적 비용을 포함하는 보험 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및 기부금이 포함된다.

반면 해당회사의 위조 행위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및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위조품 피해 회사에 손실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계약은 분쟁의 맥락에서 발생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충당하는 보험 계약이므로, 피해 회사 손실보상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및 기부금 분담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프랑스 일반조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244조 quater B II j는 기술조사 활동을 R&D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세법상 기술조사는 개발기회를 추론하기 위해 과학지식 및 기술에 관한 정보와 제품 및 공정, 방식, 정보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영구적인 업데이트 과정으로 정의된다.

R&D 활동 관련 기술조사비용은 R&D 활동을 수반할 경우 연간 최대 €60,000 한도로 세액공제 된다. 따라서 회사는 기술조사비용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적격 비용은 과학저널 구독, 데이터베이스, 기술연구 구매 경비 및 과학 경시대회 참가(등록) 비용 등을 포함한다.

## 제4절

## 일본

일본의 R&D 세제는 크게 ①시험연구비의 총액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총액형) ②중소기업 기술기반 강화 세제 ③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 ④시험연구비의 증가액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증액형)로 구성된다. 특히 2015년 세제 개정에서 기업 간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사업화와 가치창출을 촉진하고자 오픈 이노베이션형 R&D에 대한 조세지원인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는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 제42조의4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동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는 시험연구비 중 특별시험연구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특별시험연구비는 특정 상대기관과 공동시험연구나 위탁시험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지불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령 제27조의4 제13항 제8호)로 규정된다. 여기서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및 해외의 이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육성자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진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법제42조의4 제8항 제9호, 령 제27조의4 제13항 제8호).

일본의 현행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동 제도에 의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특별시험연구비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특별연구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특별시험연구비 중 ①국립시험연구기관 및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에 관한 시험연구비의 30% 상당액과 ②기업 간 공동·위탁 연구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같은 기타 특별시험연구비의 20% 상당액의 합계액이다.

다만 특별시험연구비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액의 5%를 한도로

한다. 또한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기술기반 강화 세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 시험연구비의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별시험연구비 세액공제 제도에 관한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4

第四十ニ条の四 青色申告書を提出する法人(人格のない社団等を含む。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各事業年度(解散(合併による解散を除く。))の日を含む事業年度及び清算中の各事業年度を除く。)において、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の計算上損金の額に算入される試験研究費の額(その試験研究費に充てるため他の者(当該法人との間に連結完全支配関係がある他の連結法人及び当該法人が外国法人である場合の法人税法第百三十)八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本店等を含む。)から支払を受ける金額がある場合には、当該金額を控除した金額。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ある場合には、当該法人の当該事業年度の所得に対する調整前法人税額から、当該事業年度の当該試験研究費の額に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割合(当該事業年度が設立事業年度であるとき、又は比較試験研究費の額が零であるときは、百分の八・五)を乗じて計算した金額(以下この項において「税額控除限度額」という。)を控除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税額控除限度額が、当該法人の当該事業年度の所得に対する調整前法人税額の百分の二十五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控除を受ける金額は、当該百分の二十B五に相当する金額を限度とする。

- 一 増減試験研究費割合が百分の五を超える場合 百分の九に、当該増減試験研究費割合から百分の五を控除した割合に〇・三を乗じて計算した割合を加算した割合(当該割合に小数点以下三位未満の端数があるときはこれを切り捨てた割合とし、当該加算した割合が百分の十を超えるときは百分の十)とする。) )
- 二 増減試験研究費割合が百分の五以下である場合 百分の九から、百分の五から当該増減試験研究費割合を減算した割合に〇・一を乗じて計算した割合を減算した割合(当該割合に小数点以下第三位未満の端数があるときはこれを切り捨てた割合とし、当該減算した割合が百分の六未満であるときは百分の六とする。)

6 青色申告書を提出する法人の各事業年度(解散(合併による解散を除く。))の日を含む事業年度及び清算中の各事業年度を除く。)において、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の計算上損金の額に算入される特別試験研究費の額(当該事業年度において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場合には、これらの規定により当該事業年度の所得に対する調整前法人税額から控除する金額の計算の基礎となつた特別試験研究費の額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ある場合には、当該法人の当該事業年度の所得に対する調整前法人税額から、次に掲げる金額の合計額(以下この項において「特別研究税額控除限度額」という。)を控除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特別研究税額控除限度額が、当該法人の当該事業年度の所得に対する調整前法人税額の百分の五に相当する金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控除を受ける金額は、当該百分の五に相当する金額を限度とする。

- 一 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の計算上損金の額に算入される特別試験研究費の額のうち国の試験研究機関、大学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者(以下この号において「特別試験研究機関等」という。)と共同して行う試験研究又は特別試験研究機関等に委託する試験研究に係る試験研究費の額として政

- 令で定める金額の百分の三十に相当する金額
- 二 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の計算上損金の額に算入される特別試験研究費の額のうち前号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金額以外の金額の百分の二十に相当する金額
- 8 この条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一 試験研究費 製品の製造若しくは技術の改良、考案若しくは発明に係る試験研究のために要する費用又は対価を得て提供する新たな役務の開発に係る試験研究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ために要する費用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 九 特別試験研究費の額 試験研究費の額のうち国の試験研究機関、大学その他の者と共同して行う試験研究、国の試験研究機関、大学又は中小企業者に委託する試験研究、中小企業者からその有する知的財産権(知的財産基本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知的財産権及び外国におけるこれに相当するものをいう。)の設定又は許諾を受けて行う試験研究、その用途に係る対象者が少数である医薬品に関する試験研究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試験研究に係る試験研究費の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 특별시험연구비 세액공제 제도에 관한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4

- 第二十七條の四 法第四十二條の四第六項第一号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金額は、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の計算上損金の額に算入される同項に規定する特別試験研究費の額のうち当該事業年度の所得の金額の計算上損金の額に算入される第十 三項第一号、第二号、第五号及び第六号に掲げる試験研究に係る同条第八項第九号に規定する特別試験研究費の額に相当する金額とする。
- 2 法第四十二條の四第八項第一号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試験研究は、対価を得て提供する新たな役務の開発を目的として次の各号に掲げるものの全てが行われる場合における当該各号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大量の情報を収集する機能を有し、その機能の全部若しくは主要な部分が自動化されている機器若しくは技術を用いる方法によつて行われた情報の収集又はその方法によつて収集された情報の取得
- 二 前号の収集に係る情報又は同号の取得に係る情報について、一定の法則を発見するために行われる分析として財務省令で定めるもの
- 三 前号の分析により発見された法則を利用した当該役務の設計
- 四 前号の設計に係る同号に規定する法則が予測と結果とが一致することの蓋然性が高いものであることその他妥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と及び当該法則を利用した当該役務が当該目的に照らして適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との確認
- 3 法第四十二條の四第八項第一号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費用は、次の各号に掲げる試験研究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費用とする。
- 一 製品の製造又は技術の改良、考案若しくは発明に係る試験研究 次に掲げる費用
- イ その試験研究を行うために要する原材料費、人件費(専門的知識をもつて当該試験研究の業務に専ら従事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及び経費
- ロ 他の者に委託をして試験研究を行う当該法人(人格のない社団等を含む。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当該試験研究のために当該委託を受けた者に対して支払う費用

- ハ 技術研究組合法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賦課される費用
- 二 法第四十.二条の四第八項第一号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試験研究 次に掲げる費用
- イ その試験研究を行うために要する原材料費、人件費（前項第二号の分析を行うために必要な専門的知識をもつて当該試験研究の業務に専ら従事する者として財務省令で定め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イにおいて同じ。）及び経費（外注費にあつては、これらの原材料費及び人件費に相当する部分並びに当該試験研究を行うために要する経費に相当する部分（外注費に相当する部分を除く。）に限る。）
  - ロ 他の者に委託をして試験研究を行う当該法人の当該試験研究のために当該委託を受けた者に対して支払う費用（イに規定する原材料費、人件費及び経費に相当する部分に限る。）
- 13 法第四十二条の四第八項第九号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試験研究は、次に掲げる試験研究とする。
- 一 次に掲げる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特別研究機関等」という。)と共同して行う試験研究で、当該特別研究機関等との契約又は協定(当該契約又は協定において、当該試験研究に要する費用の分担及びその明細並びに当該試験研究の成果の帰属及びその公表Fに関する事項が定めら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基づいて行われるもの
- イ 研究開発システムの改革の推進等による研究開発能力の強化及び研究開発等の効率的推進等に関する法律第二条第七項に規定する試験研究機関等
  - ロ 国立研究開発法人
- 二 大学等(学校教育法第一条に規定する大学若しくは高等専門学校(これらのうち構造改革特別区域法第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学校設置会社が設置するものを除く。))又は国立大学法人法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大学共同利用機関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と共同して行う試験研究で、当該大学等との契約又は協定(当該契約又は協定において、当該試験研究における当該法人及び当該大学等の役割分担及びその内容、当該法人及び当該大学等が当該試験研究に要する費用を分担する旨及びその明細、当該大学等が当該費用のうち当該法人が負担した額を確認する旨及びその方法、当該試験研究の成果が当該法人及び当該大学等に帰属する旨及びその内容並びに当該大学等による当該成果の公表に関する事項その他財務省令で定める事項が定めら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基づいて行われるもの
- 三 他の者(特別研究機関等、大学等、当該法人がその発行済株式又は出資(その有する自己の株式又は出資を除く。以下この号及び第七号において「発行済株式等」という。)の総数又は総額の百分の二十Q五以上を有している他の法人(連結親法人にあつては、当該連結親法人による連結完全支配関係にある各連結子法人を含む。)、当該法人の発行済株式等の総数又は総額の百分の二十a五以上を有している他の者(当該他の者が連結親法人である場合には当該連結親法人による連結完全支配関係にある各連結子法人を、当該他の者が連結子法人である場合には当該連結子法人に係る連結親法人及び当該連結親法人による連結完全支配関係にある他の連結子法人を、それぞれ含む。))及び当該法人との間に支配関係(法人税法第二条第十二号の七の五に規定する支配関係をいう。第七号において同じ。))がある他の者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と共同して行う試験研究で、当該他の者との契約又は協定(当該契約又は協定において、当該試験研究における当該法人及び当該他の者の役割分担及びその内容、当該法人及び当該他の者が当該試験研究に要する費用を分担する旨及びその明細、当該他の者が当該費用のうち当該法人が負担した額を確認する旨及びその方法並びに当該試験研究の成果が当該法人及び当該他の者に帰属する旨及びその内容その他

- 財務省令で定める事項が定めら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基づいて行われるもの
- 四 技術研究組合の組合員が協同して行う技術研究組合法第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試験研究で、当該技術研究組合の定款若しくは規約又は同法第十b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業計画(当該定款若しくは規約又は事業計画において、当該試験研究における当該法人及び当該法人以外の当該技術研究組合の組合員の役割分担及びその内容その他財務省令で定める事項が定めら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基づいて行われるもの
- 五 特別研究機関等に委託する試験研究で、当該特別研究機関等との契約又は協定(当該契約又は協定において、当該試験研究に要する費用の額及びその明細並びに当該試験研究の成果の帰属及びその公表に関する事項が定めら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基づいて行われるもの
- 六 大学等に委託する試験研究で、当該大学等との契約又は協定(当該契約又は協定において、当該試験研究における分担すべき役割として当該法人が当該試験研究に要する費用の額を負担する旨及びその明細、当該大学等が当該費用の額を確認する旨及びその方法並びに当該試験研究の成果の帰属及びその公表Hに関する事項その他財務省令で定める事項が定めら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基づいて行われるもの
- 七 特定中小企業者等(法第十ル条第八項第五号に規定する中小事業者で法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に規定する青色申告書を提出するもの、法第四十二条の四第八項第六号に規定する中小企業者で青色申告書を提出するもの及び法第六十八条の九第八項第五号に規定する中小連結法人に該当するもの(次号において「中小事業者等」という。)、法人税法別表第二に掲げる法人その他試験研究を行う機関として財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い、特別研究機関等、大学等、当該法人がその発行済株式等の総数又は総額の百分の二十マ五以上を有している他の法人(連結親法人にあつては、当該連結親法人による連結完全支配関係にある各連結子法人を含む。)、当該法人の発行済株式等の総数又は総額の百分の二十°五以上を有している他の者(当該他の者が連結親法人である場合には当該連結親法人による連結完全支配関係にある各連結子法人を、当該他の者が連結子法人である場合には当該連結子法人に係る連結親法人及び当該連結親法人による連結完全支配関係にある他の連結子法人を、それぞれ含む。)、当該法人との間に支配関係がある他の者及び当該法人が外国法人である場合の同法第三十ノ八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本店等を除く。以下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じ。)のうち試験研究を行うための拠点を有することその他の財務省令で定める要件を満たすものに委託する試験研究で、当該特定中小企業者等との契約又は協定(当該契約又は協定において、当該試験研究における分担すべき役割として当該法人が当該試験研究に要する費用の額を負担する旨及びその明細、当該特定中小企業者等が当該費用の額を確認する旨及びその方法並びに当該試験研究の成果の帰属に関する事項その他財務省令で定める事項が定めら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基づいて行われるもの八 特定中小企業者等(中小事業者等に限る。)からその有する知的財産権(法第四十二條の四第八項第九号に規定する知的財産権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設定又は許諾を受けて行う試験研究で、当該特定中小企業者等との契約又は協定(当該契約又は協定において、当該知的財産権の設定又は許諾の期間及び条件、当該法人が当該特定中小企業者等に対して支払う当該知的財産権の使用料の明細(当該試験研究の進捗に応じて当該知的財産権の使用料を支払う場合には、その旨を含む。))その他財務省令で定める事項が定めら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基づいて行われるもの
- 九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第二条第十ノ六項に規定する

希少疾病用医薬品、希少疾病用医療機器又は希少疾病用再生医療等製品に関する試験研究で、国立研究開発法人医薬基盤・健康・栄養研究所法第十<sup>五</sup>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助成金の交付を受けてその対象となつた期間に行われるもの

14 法第四十]二条の四第八項第九号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ものは、次の各号に掲げる試験研究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試験研究費の額とする。

- 一 前項第一号、第五号及び第九号に掲げる試験研究 当該試験研究に係る法第四十二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試験研究費の額(次号及び第四号において「試験研究費の額」という。)であることにつき財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証明がされたもの
- 二 前項第二号、第三号、第六号及び第七号に掲げる試験研究 当該試験研究に係る試験研究費の額として当該法人が負担するものであることにつき財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証明がされたもの
- 三 前項第四号に掲げる試験研究 当該試験研究に係る第三項第一号ハに掲げる費用の額
- 四 前項第八号に掲げる試験研究 当該試験研究に係る法第四十二]二条の四第八項第一号に規定する試験研究費のうち前項第八号の特定中小企業者等に対して支払う同号に規定する知的財産権の使用料に係る試験研究費の額として財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証明がされたもの

## 제5절

## 중국

R&D 세액공제 제도와 R&D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 제도가 있으며, 연구개발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최근 財稅(Cai Shui) 119 (연구개발비 추가비용공제의 정책 개선에 관한 고시 財稅(Cai Shui) [2015] No.119)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i)R&D와 관련 없는 현지 회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서비스 받는 사람(본청회사)의 추가비용공제액: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80%가 추가비용공제 대상이다. 하청업체는 추가비용공제를 청구 할 수 없으며 원청업체 사업의 추가비용공제를 위한 상세한 R&D 비용을 제공 할 의무가 없다. (ii)R&D와 관련 있는 현지 회사, 개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원청업체는 중립거래약관에 의해 발생한 R&D 비용을 추가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립거래약관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R&D 비용의 80%는 추가비용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는 추가비용공제를 청구 할 수 없지만, 원청업체 사업의 추가비용공제를 위한 상세한 R&D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iii)R&D를 비용 분담 협약을 통해 수행한 경우, 각 당사자는 오직 할당매개변수에 따라 비용 분담금을 공제 할 수 있다. (iii)R&D를 해외회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 원청회사는 추가비용공제를 청구 할 수 없다. 이 회람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위탁자(소유주)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것이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납세자 요건(중소기업 등)에서 가속감가상각은 추가비용공제와 호환된다. R&D 장비의 경우, R&D 비용에 추가비용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R&D 장비의 회계상 감가상각을 기반으로 슈퍼공제(CIT를 위한)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R&D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Caishui [2014] No. 75와 SAT Announcement [2014] No. 64를 근거로 할 수 있다.





---

# 국내 기술취득활동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R&D 세제지원에 대한 문제점  
제2절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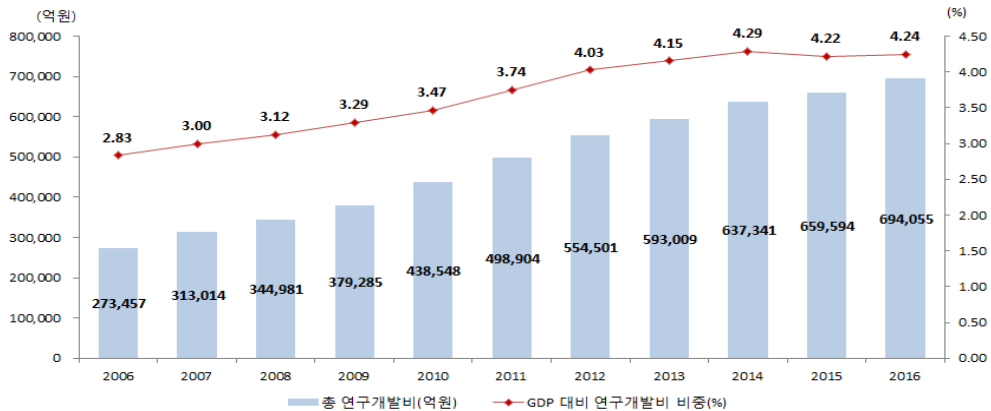
## 제1절

## R&amp;D 세제지원에 대한 문제점

## I R&amp;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업의 시장성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총연구개발비 규모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79,354백만 달러에 이른다.<sup>12)</sup>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는 4.24%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림 4-1〉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6년 R&D 활동 조사 결과 발표”, 2011.11.14.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막대한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제지원이 기업의 시장성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법인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R&D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실증분석한 결과에서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하였지만,

12)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7.

기업의 시장성과(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의 시장성과와 일부 유의한 효과가 있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업의 시장성과 간에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세액공제신청금액이 R&D 활동에 실제 투입되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외형적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전 부처의 R&D 사업 정보를 기록한 NTIS DB에서 주관기관이 기업이고, 해당 기업의 재무자료가 존재하는 21,265건의 R&D 사업을 이용하여 비모수적 유전자매칭 기법과 모수적인 이중차분회귀분석 모형을 결합한 2단계 회귀분석 결과,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들의 자체 R&D 투자와 지적재산권등록 확대, 자금조달 촉진, 유형자산·인적자산·마케팅 투자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시장성과(영업이익, 부가가치, 매출 증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4)</sup>

R&D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줄이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리는 방향으로 꾸준히 세법을 개정해 왔다. 그러나 실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장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세제지원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일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약 66%에 달한다.<sup>15)</sup>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R&D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액공제신청금액이 실질적으로 R&D 활동에 투입된 비용인지 조사하는 국세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sup>16)</sup> R&D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인원을 기업부설연구소나 R&D전담부서의 소속

13) 김학수·박기백·손원익·전영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4) 이성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KDI, 2017.

15) 김학수·박기백·손원익·전영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인원으로 위장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위 신청하는 등의 오남용이 R&D 세제 지원의 효과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R&D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기준 9조 4천억 원(7.44%)으로 전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의 3위에 해당한다. R&D에 대한 조세지원의 규모나 비중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로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는 중소기업의 R&D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016년 기준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40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지출의 약 75.6%를 차지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24.4%에 불과하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전담부서에서 R&D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R&D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전담부서의 승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인증 및 사후 현장확인 점검이 상당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조사권한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R&D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sup>16)</sup> 이처럼 단순히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전담부서 인증만 획득하면 손쉽게 R&D에 대한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2018년 10월말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및 R&D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은 각각 38,612개와 25,662개에 달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R&D전담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신규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서류작업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R&D전담부서를 설치할 유인이 감소할 것이고, 이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 집계와 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이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다. 중소기업은 직원 1명이 R&D뿐 아니라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 및

16) 김학수·원종학·김빛마로, R&D 조세지원 제도의 세무행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7) 상계서

관측활동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별 투입시간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근무시간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가 많지 않아 공동경비 안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과세당국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프로젝트별 경비집계 및 증빙관리를 요구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R&D 활동에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이행 가능한 수준에서 연구개발비와 일반관리비의 구분경리 및 증빙자료 보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표 4-1】 기업유형별 R&D 활동 비교

		2015년		2016년	
연구개발비	대기업	38조 9,303억 원	(76.1%)	40조 7,787억 원	(75.6%)
	중소기업	6조 3,753억 원	(12.5%)	6조 8,717억 원	(12.7%)
	벤처기업	5조 8,308억 원	(11.4%)	6조 3,021억 원	(11.7%)
연구원	대기업	154,809명	(48.7%)	155,658명	(48.4%)
	중소기업	87,166명	(27.4%)	89,384명	(27.8%)
	벤처기업	75,867명	(23.9%)	76,281명	(23.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6년 R&D 활동 조사 결과 발표”, 2011.11.14.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이나 인력조직, 연구개발능력 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 특히 우수한 R&D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인건비당 시장성과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난다. 연구개발능력이 높은 연구원을 확보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R&D 투자성과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sup>18)</sup> 또한

1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

연 3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하고 있다.<sup>19)</sup>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직원의 직무 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 II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의 현행 R&D 관련 조세지원 제도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 활동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R&D 활동의 양적 증가에는 기여해 왔으나 R&D의 효율성 등 R&D 활동의 질적 성장에는 제한적 성과를 보여 왔다. 따라서 R&D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의 성공에 대한 보상(incentive)으로 조세혜택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정책을 매개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R&D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품매출형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이중 조세지원 문제

특허박스 제도의 일환인 기술이전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1982년부터 20여 년간 시행되었으나 2003년 재정경제부가 R&D 투자 세액공제에 더하여 R&D의 성과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처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이중지원의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폐지된 역사가 있다. 이렇듯 R&D 조세지원 제도와 특허박스 제도에 의한 조세지원이 이중지원이라는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R&D 활동의 성과인 기술과 특허개발활동의 성과인 특허는 창출과정 및 자산 자체의 특성, 활용전략 등에서 서로 다른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선행특허와 특허동향에 대한 조사, 보유특허 자산실사 등을 바탕으로

19) 소득세법 제12조

강력한 권리획득을 위한 청구항의 설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R&D 기획과 병행하여 특허개발 기획이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 동안 공개되지 않으므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상실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R&D 과정에서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선행특허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필요 시 회피설계 등을 통해 특허개발 목표와 R&D의 방향과 내용이 조정되어야 한다. 개발된 기술은 그 자체로 재산권이 되지 못하는 반면, 특허는 출원과 등록심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획득한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특허는 자체적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100의 가치를 가진 우수한 기술이라 해도 특허명세서 작성과 등록심사과정의 심사대응 등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의 크기와 안정성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기본적인 기술적 사상을 제공하지만, 특허는 그 기술적 사상을 시장에서 개발 또는 출원인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는 기술로 창출되어도 경쟁적 가치는 특허에서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R&D의 성과라고 흔히 얘기하는 기술과 특허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창출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기업이 R&D 투자에 대해 받는 세액공제의 범위에는 상이에서 언급한 특허창출활동 중에 많은 부분과 관련된 비용<sup>20)</sup>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창출과정, 자산의 특성, 활용전략이 서로 다른 기술과 특허를 동일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 조세지원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R&D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R&D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정부가 일부 분담함으로써 R&D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견인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의한 조세이다. 반면 특허박스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특허로 대표되는 혁신의 결과물에 대한 활용실적이 낮기 때문에, 혁신의 결과물인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 창출 시 그 성과에 대한 Incentive를 제공하려는 목적의 조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원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명확히 구별되므로 R&D 자체의 활성화와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해 별도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을 이중지원으로 볼 필요는 없다.<sup>21)</sup>

20) 특허의 개발을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동향조사 비용,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과 관련된 수수료, 특허 활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산실사와 포트폴리오 구축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수반된다.

21) 강경남 외 6인,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 국가별 지식재산 조세지원 제도 차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atent Box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2. 조세형평성 문제

2006년 기술이전 과세특례의 폐지 및 2014년 동 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R&D 투자 규모도 크고 R&D의 성공 가능성도 높으며, 높은 기술수준으로 시장성 있는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함에 따라 지식재산의 활용이 활발하여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기술이전 과세특례의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2014년 국감자료<sup>22)</sup>에서 전체 법인의 0.35%에 불과한 대기업이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의 86.9%를 차지한다는 분석에 따라, R&D 투자 세액공제가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세제감면혜택도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14년 기술이전 과세특례의 재도입 당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과세특례 확대 과정에서도 중견기업까지만 그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세형평성 문제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보다는 운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가 적용된 제품매출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특허박스의 도입 시, 앞의 사회적 논의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세형평의 논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의 기술이전 과세특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허박스 도입 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후, 정책적·경제적 효과검증을 통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경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IP제품매출형 특허박스 도입 방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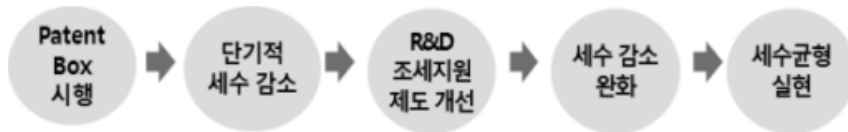
## 3. 세수 감소 문제

무엇보다 특허박스의 도입에 있어 가장 민감하게 지적되는 쟁점사항은 세수감소이다. 특허박스는 적격 특허가 적용된 제품판매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감소로 인해 국정 운영에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이미 해외의 실증분석에서 특허박스로 인한 세수감소의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22) 제19대 국회 2014년 국정감사 회의록, 기획재정부, 2014.

그러나 기존의 특허박스 제도 하에서는 적격 IP가 하나라도 적용된 경우 제품 전체의 소득 중 IP 개발에 투자된 재무적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총특허기여도’ 개념을 도입 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특허의 실질적 기여도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제세액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중견 및 대기업으로 단계적 도입과 기존의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재정비 추진한다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 또는 전체적으로 세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허박스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지출의 증가를 기존의 R&D 관련 조세지출을 절감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세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2|와 같이 특허박스의 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만, 중장기적으로 R&D 조세지원 제도가 개선되어 세원확대에 따라 세수 감소가 완화되면서 세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IP제품매출형 특허박스 도입 방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4-2| 특허박스 도입과 세수 균형 프로세스



#### 4. 적용 대상 범위와 수준 설정의 문제

해외의 특허박스 도입 사례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특허적용 제품매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영국의 특허적용 제품 매출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 일체형 제품에 적격 특허가 하나라도 적용된 경우 제품 전체의 매출에 대해 특허박스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납세자가 꼭 필요하지 않은 특허를 과다 출원하거나, 핵심적 기능이나 부품이 아닌 일반적 적용을 통해 특허박스의 혜택을 받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비용이 수반된다.

불필요한 특허의 과다 출원과 적절한 적용의 문제는 특허의 기여수준에 대한 정량화된 검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기술 가치평가 방법론에

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특허기여도 개념을 활용하여 해당 제품에 적용된 특허의 매출기여도를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제품에 적용된 모든 특허의 기여도는 개별 특허의 기술기여도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개별 특허의 기술기여도를 확장하면 산업기술요소와 개별특허강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또한 제품에 적용된 특허가 많은 경우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에 대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비중을 반영하여 산출할 수 있다. 산업특성을 반영하는 산업기술요소와 개별기술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반영하는 개별기술강도에 관한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sup>23)</sup>에서 산업기술요소표<sup>24)</sup>와 개별기술강도<sup>25)</sup> 수치를 이용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특허기여도} &= \text{산업기여도} \times \text{특허비중} \\ &= \text{산업기술요소} \times \text{개별기술강도(또는} \times \text{특허비중)} \end{aligned}$$

또한 R&D지출의 세액공제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경우에도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만 신뢰도를 확신하기 어려운 반면, 특허박스 제도 하에서는 특허등록 자료와 특허 적용에 관한 기술적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제품 내 특허적용 여부와 수준에 대한 검증을 보다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 5. 도입 문제점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업의 시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인과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다.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시장화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R&D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크지만, 시장화에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등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장화에 성공한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전 세계

23)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4.

24) 2012년 지식경제부가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기술평가 표준모형의 산업별 평가지표이다.

25) 기술성 관련 10개 항목과 사업성 관련 10개 항목의 평가표로서, 해당 기술의 사업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

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허박스 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은 EU회원국으로, 24개 EU회원국 중 1/3에 해당하는 8개 국가(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가 현재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기술혁신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 EU회원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연평균 10.8% 증가한데 반해 미도입 국가는 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혁신지수 2016(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6)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 EU회원국의 혁신지수가 EU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sup>26)</sup> 그러나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향후에도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허박스 제도는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서 ‘유해조세경쟁제도’로 지정된바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의 수단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의 창출 단계에는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통하여 위험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R&D 세제지원은 지나치게 지식재산의 창출 단계에 집중되어 R&D 성과의 활용단계에는 지원이 미흡한 만큼 R&D 투자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장기업의 70% 이상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등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부분 제품이 특허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특허박스 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특허박스 제도 적용대상 매출의 분리에 투입되는 세무행정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특허박스 제도 도입보다 법인세율 인하가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 아울러 매출 창출에 특허권이 필요한 일부 업종에 세제혜택이 집중됨으로써 업종 간 차별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 유경진,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KERI Brief 17-04, 한국경제연구원, 2017.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인증 후 이익발생연도부터 세금감면이 개시되기 때문에 시장화 성공을 전제한 감면제도이다. 다만 벤처기업 인증이 기술보유수준이나 시장화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시행되고 있어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특허박스 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 과정에서 시장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III 세제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정책효과의 효율성 증대

정부가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시장성과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7)</sup>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시장성도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과 별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대기업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장성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R&D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는 R&D 결과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R&D 과제 위주로 세제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R&D 세제지원의 근본목표와 배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 8월~2018년 8월) 간 국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에서 출원한 특허 건수는 3만 6,166건이며, 이 중 기업에 기술이전된 사례는 1만 2,740건(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65%는 특허출원만 완료한 채 상용화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자들이 특허출원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예산을 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평가기준이 특허출원 여부이기 때문이다.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과제 위주로 예산이 분배되다보니 혁신적, 선도적 연구과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7) 김학수·박기백·손원익·전영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28) 조선일보, 정부 출연원 특허 65%는 장롱속에..., 2018.09.21.

혁신적인 연구는 사업화까지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요구될 뿐 아니라 R&D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낮다. R&D에 대한 세제지원과 사업화 성공여부와의 관계를 강조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에만 세제혜택을 집중할 경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기술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업의 시장성으로 얼마나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 세제지원의 규모가 결정되는 현행 평가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R&D 프로젝트는 굳이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누구나 시도할 것이다. R&D에 대한 정부지원은 시장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높은 과급력을 가지는 불확실한 R&D 프로젝트에 집중되어야 한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R&D에 나서는 기업이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세제지원의 조건으로 R&D 투자와 성과를 꼭 연동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 1.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의 관리감독 강화

우리나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청금액이 실제 R&D에 투입되었는지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sup>29)</sup>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승인받은 R&D전담부서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특별한 조사 없이 세액공제 하여 주고 있다. R&D전담부서의 승인과 사후 현장 확인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 R&D 활동에 투입되지 않은 인원을 R&D전담부서 소속으로 속여서 부당 허위공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R&D 활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원래의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6년 기준 R&D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는 2조 9,514억 원으로, 조특법상 조세지출 항목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R&D에 대한 지원에 막대한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금액이 실제 R&D 활동에 사용된 것인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이 허위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비 부당·허위 공제청구는 R&D에 세제지원과 기업의 시장성과 간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R&D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R&D에

29) 김학수·원종학·김빛마로, R&D 조세지원 제도의 세무행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대한 세제지원이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당·허위 공제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혁신적 기술과 신제품을 위한 R&D 투자에는 현재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4-2】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억 원, %)

	실적	비중
국민생활안정	125,727	31.69
간접국세	94,455	23.81
연구개발	29,514	7.44
지역균형발전	25,225	6.36
중소기업	24,176	6.09
기타	22,369	5.64
근로·자녀장려	17,679	4.46
투자촉진	16,496	4.16
저축지원	14,319	3.61
기타직접국세	14,080	3.55
공익사업지원	5,006	1.26
제주국제도시육성	2,316	0.58
외국인투자	2,121	0.53
고용지원	1,742	0.44
기업구조조정	921	0.23
농협구조개편	480	0.12
기업도시	75	0.02
국제자본거래	24	0.01
수협구조개편	44	0.0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 2. 지식재산권 취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투입단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은 성공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산출단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은 이미 확정된 결과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취득비용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제공할 정책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액이 2008년 9억 1천만

원에서 2016년에는 21억 1천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형태가 반드시 세제지원일 필요는 없다. 세제지원은 감면받을 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재무여건이 열악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중소기업에는 특허권 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감면이 무의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가 문제라면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 중소기업의 특허권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 3. 공제대상 R&D 투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관측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등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이나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비용은 R&D 활동과 일체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향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도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sup>30)</sup> 다만 동 연구의 말미에 특허비용보다 정보조사비에 대한 지원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정책효과 부족으로 무산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제안한 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정보조사비를 공제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0) 이동규·송호신·김승래,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I):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IV 2018년 세법개정안과 R&D에 대한 세제지원

2018년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의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및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를 신설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을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는 과세이연제도일 뿐 궁극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의 범위에 단순히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한 것으로, 공제율 인상이 아니므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턱에서 혁신성장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였기에 혁신성장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나 개편된 항목 수에 비하여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실제 R&D 활동에 사용되지 않은 부당청구액을 줄이는 대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R&D에는 보다 파격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2절

##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 I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포함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투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세지 지원은 정책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세부 공제대상이었다가 2010년 새로운 조항으로 분리·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4-3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변화

적용연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일반기업	
2010	30%	20%	
2017	30%	최대 30% (20% + $\alpha$ )	
2018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일반기업
	30%+ $\alpha$	25%+ $\alpha$	20%+ $\alpha$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alpha$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times$ 3, 최대 한도 10%(중견기업 15%)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당기분 R&D 비용에 대해 기본공제율과 추가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인 경우 30%를 적용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세 배를 곱한 값을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에 더하여 곱하는 비율을 산출한다.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더욱 크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30%부터 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가능하고,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최소 25%부터 최대 40%까지 적용 가능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본 공제율을 크게 설정하여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세액공제율의 차이는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MAX(당기분, 초과분) 선택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기본비율 + 추가비율	
초과분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이외기업 25%	기업유형에 따른 기본비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이외기업 25%
당기분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이외기업 매출액대비 0.5배	추가비율 (한도 10%)	$\frac{\text{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 \times 3$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차이점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보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인력개발비 지출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지만,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전기 대비 당기 지출 증가액에 대해 공제하는 방식 또는 당기분 지출액에 대해 공제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로 높은 편이지만, 같은 조건(당기분 방식)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25%로 약간 낮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보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는 총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7개의 기술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공제대상으로 한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의 총 11개 분야이며, 36개 세부분야나 157개의 기술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 제시되어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자체 R&D와 위탁 및 공동 R&D로 나뉠 수 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조세감면액은 22,709억 원(2018년 잠정)으로 전체 2018년 일몰도래 R&D 조세감면 제도의 감면액의 약 93.3%를 차지한다.

표 4-4 | 2018년 일몰도래 R&D 관련 세제 조세지출규모의 추이

(단위: 억 원)

항목별 조세지출 내역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	2018 잠정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소득세	88	154	228	311	348	404	528	629	728	779
	법인세	15,447	18,417	23,113	25,256	28,502	27,456	27,630	20,316	22,205	21,930
	계	15,535	18,571	23,341	25,567	28,850	27,860	28,158	20,945	22,933	22,709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011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101개 기업이 373.8억 원 수준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을 신고했다. 일반기업 22개사, 259.3억 원(1개사 당 평균 11.8억 원), 중소기업 79개사, 114.4억 원 (1개사 당 평균 1.4억 원)이다.

표 4-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현황(2011년 기준)

(단위: 개사, 억 원)

구분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계	법인수	71	30
	세액공제액	199.7	174.1
일반기업	법인수	15	7
	세액공제액	115.0	144.4
중소기업	법인수	56	23
	세액공제액	84.7	29.7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II, 2015.

## II 세액공제 제도 확대

###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신설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비교하여 본 제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더욱 높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금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요건1) 시설투자시 일반연구개발비 등의 규모가 매출액의 5%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요건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일반연구개발비의 10%이상이거나 일정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요건) 이때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경우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서 상에 규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2016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포함) 비중은 평균 3.16%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3.07%, 중소기업 2.53%, 벤처기업 5.68%를 기록하고 있다. 세액공제의 투자요건(1)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없다.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과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의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하여, 현행 세액공제 투자요건(1과 2)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한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현행 5%이상에서 2016년 평균 3.16%에 근접한 3%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제한요건인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중 역시 현행 10%이상에서 현실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3%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R&D 투자를 진작시켜 R&D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기업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상 혜택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목적의 특정한 시설용 자산 혹은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감면한다.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단, 중고품 및 리스에 대한 투자는 제외)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그 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조세지원 제도를 집중하고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 잠정금액이 1,591억 원이다. 신기술기업화 자산에 대해서 공제대상에서 분리·신설하였다.

표 4-6 | 2018년 일몰도래 R&D 관련 세제 조세지출규모의 추이

(단위: 억 원)

항목별 조세지출 내역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	2018 잠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소득세	3	2	2	4	7	7	6	8	5	3
	법인세	1,232	947	1,063	1,548	1,593	2,005	1,503	1,453	1,507	1,588
	계	1,235	949	1,065	1,552	1,600	2,012	1,509	1,461	1,512	1,591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008년 10%에서 2014년에는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2016년 개정으로는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하향 조정되었다.

표 4-7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변화

적용연도	세액공제율		
1998	5%		
2002	10%		
2003	7%		
2008	10%		
2014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3%	5%	10%
2016	1%	3%	6%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여타의 생산성·안전·환경 분야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축소되었으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적인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현황은 과학인프라와 연구인력 수준이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통한 R&D 설비투자를 유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다. R&D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민간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고용에 있으며, 특히 R&D 및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세제지원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개정하고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시설투자로 인한 노동의 구축(Crowding-out)을 고려하여 연구인력개발(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제외),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환경보전시설 등의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제율을 축소하고 있다.

표 4-8 |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항목	개정전	개정후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2017.12.19. 개정전) 100분의 3 중견기업 : 100분의 5 중소기업 : 100분의 7	100분의 1 중견기업 : 100분의 3 중소기업 : 100분의 7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연혁 가공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등의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를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중급 규모에 특례제도에 해당하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2018년 소득세 15억 원, 법인세 2,137로 전망된다.

표 4-9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 관련 조세특례 조세지출규모 비교

(단위: 억 원)

조세지출 내역	구분	'16실적	'17전망	'18전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계	4,873	3,237	2,152
	소득세	12	14	15
	법인세	4,861	3,223	2,137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8.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넓은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대상은 설비투자에 한하고 있고, 그 투자대상 설비도 상당히 열거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열거된 장비 중 일부는 생산성 기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미 상당부분 범용화된 설비도 있다. 단시간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세법이 특정 장비를 정하여 기업에 조세특례지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생산성 기여 여부의 불확실성, 설비 기능의 중복성, 보급률 등을 감안할 때 물류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은 해당 설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 설비, 첨단기술설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2의 내용의 대다수가 1999년 도입된 것으로 낙후되거나 범용화된 설비는 제외시켜야 한다.

국민경제 과급효화가 큰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할 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시스템, 3D 프린터를 대상 장비로 추가할 수 있으나, 혁신성을 고려할 때 고용 유지를 전제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빠른 기술진보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향상시설을 세법에서 열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제조업(대기업)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공제율 축소 및 중소기업·중견·일반 기업의 공제율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있다.

#### 4.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합병 및 주식취득 촉진을 통해 벤처 창업자 등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인수형 기술이전 촉진 및 M&A를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제도이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특수관계인과의 합병 제외)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의 130% 이상일 것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표 4-10】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적용연도	내용
2014	□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16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의 150% → 130%
2017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인수가액 중 주식지급비율 20% 미만 → 50% 미만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지 않음 → 삭제 (주식배정 허용)
2018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인수가액 중 주식지급비율 50% 미만 → 삭제 (50% 이상도 세액공제 가능)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그러나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2015년 25억 원, 2016년엔 5억 원이라는 저조한 감면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감면실적을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5.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피인수법인 지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 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를 초과하고, 인수법 인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0% 에 지분비율<sup>31)</sup>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매입가액 ≥ 순자산시가의 130% × 지분비율)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표 4-1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적용연도	내용										
2014	□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16	□ 세액공제 요건 추가 및 완화 ◦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인수 (추가) 상장회사인 경우: 지분의 30% 초과 인수 & 경영권 인수 ◦ 매입가액 ≥ (순자산시가의 150% × 지분비율) → 매입가액 ≥ (순자산시가의 130% × 지분비율)										
2017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주식 취득비율 완화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개정 전</th> <th>개정 후</th> </tr> </thead> <tbody> <tr> <td>상장법인</td> <td>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td> <td>(좌 동)</td> </tr> <tr> <td>비상장법인</td> <td>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td> <td>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td> </tr> </tbody> </table>		개정 전	개정 후	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좌 동)	비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개정 전	개정 후								
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좌 동)									
비상장법인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인수가액 중 주식지급비율 20% 미만 → 50% 미만 ◦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지 않음 → 삭제 (주식배정 허용)										
2018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인수가액 중 주식지급비율 50% 미만 → 삭제 (50% 이상도 세액공제 가능)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31) 지분비율: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4-12|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추이

(단위: 억 원)

항목별 조세지출 내역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	2018 잠정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4)	소득세							-	-	-	-
	법인세							23	5	12	12
	계							23	5	12	12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III 과세특례제도 확대

#### 1.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R&D 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률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R&D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를 지연하는 제도이다.

내국인이 R&D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경우, 지급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다.

|표 4-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추이

(단위: 억 원)

항목별 조세지출 내역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	2018 잠정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 제10조의2)	소득세	-	-	-	-	-	-	-	-	-	-
	법인세	7	13	12	16	20	15	8	9	11	10
	계	7	13	12	16	20	15	8	9	11	1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현행법 체계는 특례 적용대상 출연금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6개 법률에서만 규정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의 열거주의 방식이다.

출연금을 지원 받는 납세의무자는 출연금의 근거 법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익금불산입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포괄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개발된 기술의 거래활성화를 통해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기업 간 기술거래를 통해 기술역량을 제고 및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서 기술이전·대여를 한 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며, 기술을 취득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 양도,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 분	수혜대상	수혜내용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특허권 등을 이전한 중견·중소기업	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특허권 등을 대여한 중소기업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
기술취득 비용 세액공제	특허권 등을 취득한 내국인 또는 법인	특허권 등의 취득금액* 5%(중소기업 10%) * 취득금액 한도 : 해당 기업의 법인세의 10%

[표 4-1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추이

(단위: 억 원)

항목별 조세지출 내역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	2018 잠정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	소득세	5	5	-	6	0.07	7	7	0.06	0.02	0.01
	법인세	4	7	4	3	2	2	7	2	3	4
	계	9	12	4	9	2	9	14	2.06	3.02	4.01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IV R&D 세제지원의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8년 일몰도래 R&D 조세감면 제도의 총 감면액은 약 24,326억 원(2018년 전망)으로 추정되며, 이 중 법인세가 약 23,544억 원, 소득세가 약 782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R&D 조세감면 제도에 상당한 규모의 세제지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총 7가지의 R&D 조세감면 제도 중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전체의 조세지출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R&D 조세감면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조세감면액은 전체 2018년 일몰도래 R&D 조세감면 제도의 감면액의 약 93.3% 22,709억 원을 차지한다.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감면액이 1,591억 원(2018년 잠정)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18년 일몰도래 R&D 조세감면 제도의 감면액은 12억 원 이하로 앞선 두 가지의 세액공제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R&D 조세감면 제도 중 두 가지의 대규모 과세특례 조세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4~2015년을 기점으로 감면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2015년, 2017년, 2018년 일반기업에 대한 공제율만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조세지출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동기간에 오히려 공제율이 증가하여 조세지출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2014년과 2016년에 세액공제율이 두 차례 감소하면서 조세지출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머지 소규모 R&D 조세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의 추이는 연도별 부침이 존재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총 6개의 R&D 관련 특례제도(신설제도 제외)를 살펴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경제의 저성장과 함께 R&D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도가 빈번하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특례제도의 경우에는 수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최근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재신설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4년에 신설하였고, 수혜대상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반면 일반연구와 관련된 R&D 특례제도는 오히려 제도의 혜택이 축소되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달리 일반연구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공제율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최근에 공제율을 축소하고 있으며, 신기술기업화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서 분리하여 제도를 신설한다.

국내의 R&D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 비해 실질적인 R&D에 대한 지표인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유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경제성장 둔화와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R&D 투자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R&D 투자의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

##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중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관해서는 법규정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유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도 적격 R&D 활동에 대해 법령중심으로 설명할 뿐, 납세자입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적격 R&D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규정의 모호성은 R&D 주체에게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특허조사·분석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특허출원·등록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17년 특허청이 건의한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되었지만 세액공제는 도입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포함 문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비율 및 거래기업 간의 관계, 공제대상 기업, 공제대상 기술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일관된 조세지원정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조세지원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기술양도 및 대여 소득 세제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우려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감면혜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도 기술이전 소득 세액감면의 규모는 2억 원에 불과하여 동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많지 않으며, 산업재산권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보다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산업생산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 감면은 실효성을 얻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정책과도 배치된다.

기술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기술이전 소득의 50%감면 규정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게도 확대·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2016년 소득세법 개정에 의해 비과세 한도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축소되어 직무발명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 및 중소기업은 성과평가나 승진 등의 인사고과 체계의 미비로 임직원의 직무발명을 통한 기여활동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못하여 비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금이 유일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점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R&D 관련 조세지원 제도는 R&D 활동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정부차원에서 공유(risk sharing)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 등의 기술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의 폭을 넓히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강경남 외 6인,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 국가별 지식재산 조세지원 제도 차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atent Box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서비스업육성·지원방안, 2007.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go.kr)
- 국세청, 2017년 개정세법 해설, 2017.
- 기획재정부, 제19대 국회 2014년 국정감사 회의록, 2014.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별.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II, 2015.
- 김종갑, 공공 기술이전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학수, 박기백, 손원익, 전영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김학수, 원종학, 김빛마로, R&D조세지원제도의 세무행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노민선, 이삼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9(2), 2014.
- 대법원 사법연감([HTTP://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
- 대한민국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 박규호,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경제학 연구. 지적재산논단, 2(1), 2005. pp.119-134.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4.
- 손원익, 홍승현,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 특허청·한국조세연구원, 2011.
- 안상훈, 백철우, 서경란, 이유나, 특허정보활용 확산정책의 산업적 기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07.
- 유경진,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KERI Brief 17-04, 한국경제연구원, 2017.

- 이동규, 송호신, 김승래,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I):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성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KDI, 2017.
- 임부루, 박규호, 이근, 선행기술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허성 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기술경영경제학회, 2011.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선행기술조사와 지재권 관리전략, 2007.
- 특허청, 2017 지식재산백서, 2017.
- 특허청, 2017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 2017.
- 특허청, NPE 동향 연차보고서, 2017.
- 특허청, 지식재산동향, 2017.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7.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년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지원방향, 2013.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R&D 특허기술동향조사 가이드북, 2017.

## 2. 국외 문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7.
- OECD, *Oslo Manual*, 1995.
-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 Solow, Robert M.,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70, No.1, 1956, pp.65-94.

## 3. 신문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6년 R&D 활동 조사 결과 발표", 2011.11.14.
- 조선일보, 정부 출연연구 특허 65%는 장롱속에..., 2018.09.21.
-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도전에 직면하다(互联网知识产权保护面临挑战)', 2015.12.3.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2018.2.20.



---

## 부 록

부록1 2018 조세지출건의서

---



## 부록 1

## 2018 조세지출건의서

## I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1. 제도개요

## ○ 조세지출 내용

- 목적: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합리화하여 연구자의 발명의지를 고취하고 혁신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술 고도화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은 대규모의 연구시설과 인력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고도화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조직을 통한 발명에의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직무발명의 중요성 증가
- 직무발명은 사용자의 투자지원과 종업원의 발명의지가 융합된 결과물이므로,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는 환경이 성립되어야 활성화 가능
- 사용자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R&D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비용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포함하고 있음
  - \* 조특법 시행령 별표6
- 소득세법에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직무발명보상금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직무발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발명을 촉진시키고자 함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감면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을 개정하여 비과세 한도를 연 2,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대상자: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자체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은 종업원, 임원 또는 공무원
- 운영기간: 해당 없음

○ 예상 감면액

(단위: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향후 5년간 전망치	50	50	50	50	50

- 민간에 비해 직무발명보상이 활성화되어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현행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근거하여 예상세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부 산하 전문기술연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14~2017년 동안 직무발명보상금 총액은 62억 원이고, 이중 300만 원 이하 비과세소득은 19억 원, 300만 원 이상 과세소득은 43억 원임. 전문기술연구원의 평균연봉인 6,722만 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하면 설문대상 연구자의 총 과세액은 10억 원(=43억 원×24%)으로 추정됨.

- 해당 설문 전문기술연구원의 기술료 총액은 164억 원이므로, 2014~2016년 평균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1,141억 원(NTIS)으로 환산하면, 현행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근거한 공공연구기관 전체 산출세액은 71억 원(=10억 원×1,141/164)으로 추정됨
  - 개정(안)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소득세법 12조 기타소득 비과세 300만 원 한도 규정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같음하여, 동일한 전문기술연구원 설문조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예상 세액 산출
  - 기타소득 규정 적용 시, 필요경비율 70%, 기타소득세율 20%가 적용(즉, 원천징수세율 6%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액은 1,000만 원 이하임. 따라서 설문대상 연구원의 평균연봉 6,722만 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24%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3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직무발명 보상자는 원천징수세율 6%가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임. 3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보상자의 300만 원 초과 보상금 총액은 6.9억 원이고, 원천징수세율 6%를 적용하면 설문기관 1,000만 원 이하 보상자의 산출세액은 0.4억 원(=6.9억 원×6%)임
  - 반면 설문기관의 종합과세의무 대상인 1,000만 원 초과 직무발명 보상자의 300만 원 초과 보상금 총액은 36억 원이고, 필요경비율 70%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11억 원(=36억 원\*(100-70%))임. 평균연봉 6,722만 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24%이므로, 산출세액은 2.6억 원(=11억 원\*24%)억 원임
  - 따라서 해당 설문기관의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종합소득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모두 합하면, 해당 설문기관의 세액 합계는 3억 원(=0.4억 원+2.6억 원)임
  - 해당 설문 전문기술연구원의 기술료 총액은 164억 원이므로, 평균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1,141억 원(NTIS)으로 환산하면, 현행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근거한 공공연구기관 전체 산출세액은 21억 원(=3억 원×1,141/164)으로 추정됨
  - 즉, 현행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하에서의 산출세액을 71억 원, 개정안인 기타소득 규정 하에서는 산출세액은 21억 원으로 추정되므로, 개정안인 기타소득 규정 적용 시 예상되는 세액감면은 50억 원(=71억 원-21억 원)임
- \* 다만, 민간의 직무발명보상까지 고려할 경우 추가적 비과세 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세법 변경사항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80년	직무발명보상 비과세 신설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재분류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300만 원) 설정

○ 기타 주요제도 변경사항

해당 없음

2. 작성 항목

1) 목적

○ (1-1) 조세지출 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요 내용
조세지출 목적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합리화하여 발명의지를 고취하고 혁신활동 활성화
특정 상황/문제	낮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설정으로 인해 세후실질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연구원의 혁신의지 저하 및 특허창출활동 위축 공공(연)의 직무발명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거래시장 침체 우려 ※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수입 : ('16) 81억 원 → ('17) 23억 원
정책 대상자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자체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종업원, 임원 또는 공무원

○ (1-2) 조세지출과 특정 상황과의 연계성

-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고품질 특허창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인 수단임
- 직무발명 창출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 및 기술거래 활성화 도모

○ (1-3) 조세지출과 부처의 정책방향, 목표와의 연계성

구 분	주요 내용
부처의 정책방향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조세지출과의 연계성	직무발명보상 비과세 한도 완화가 직무발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발명의지를 고취함으로써 우량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 2) 성과지표

### ○ (2-1) 성과지표의 설정

- 지표명 및 개념: 기술료 수입(기술거래규모)
- 지표산출방식: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계산
- 목적과의 연계성: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를 통해 직무발명 및 기술거래 활성화

### ○ (2-2)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설정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과세 한도 도입 이전의 기술료 증가율 20% 유지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매년 20% 증가율 반영

구 분	향후 목표치			
	'18	'19	'20	...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수입 (억 원)	1,621	1,945	2,334	...

## 3) 대상자

### ○ 정책대상자 파악

- 정책대상자 선정 :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자체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종업원, 임원 또는 공무원
- 대상범위 :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자체에 소속되어 직무발명을 수행하는 연구인력 460,769명 ('18년 기준)

|부표 1| 기관유형별 연구인력 수

(단위: 명)

연도	공공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합계
2012	28,822	275,986	96,916	401,724
2013	31,140	281,874	97,319	410,333
2014	33,322	304,808	99,317	437,447
2015	35,550	317,842	99,870	453,262
2016	36,280	321,323	103,166	460,769

\*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go.kr)

4) 기대효과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중 선택하여 작성)

○ (4-1) 효율성 측면의 효과

- 고품질 특허창출 및 이전 촉진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확보 가능

○ (4-2) 형평성 측면의 효과

- 해당없음

5) 세출예산

○ 목적이 유사한 세출예산이 있는 경우

- 세출예산 사업명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원 내용: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 규모: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 대상 컨설팅 실시(비용지원X)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규모(단위: 억 원)		
코드	코드	코드	명	코드	명	2016 결산	2017 예산	2018 예산
110	114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232 -302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직무발명활성화)	3.2	3.7	4.6

- 상호보완효과: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의 경우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제도구축 및 인식확산을 직접지원하며, 직무발명보상 비과세는 직무발명제도 활용의 결과로 발생한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므로 상호보완효과 발생
- 중복 조정여부: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은 기업대상 지원이고 직무발명보상 비과세는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종업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중복 사항 없음

6) 선행연구

-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술혁신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강경남 외, 2014)

- 직무발명의 단계별 금전적 보상이 기업의 특허출원·등록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분석 결과, 등록보상과 실시보상이 기업의 특허출원·등록 활동 촉진
- 특히 실시보상은 기업의 매출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시보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도 제고한다는 결과 제시

○ Incentive Pay or Windfalls: Remuner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in Japan (Owan 외, 2010)

- 일본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업성과를 제고할 가능성 시사
-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유가 특허가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종업원 인식도와 특허의 사업화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p><b>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b>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p> <p>2) 대학의 교직원인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p>	<p><b>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b>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p> <p>2) 대학의 교직원인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p>
<p><b>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b></p> <p>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p> <p>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p>	<p><b>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b></p> <p>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2,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p> <p>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2,1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2,1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p>

## II 특허출원·등록 비용의 세액공제

### 1. 제도개요

#### ○ 조세지출 내용

- 목적: 중소기업의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 확보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 육성
- 조세특례제한법에는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다음 표와 같이 두고 있으나,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을 위한 비용은 제외되어 있음

<p>▶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가 직전연도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또는 당해 연도 발생분의 25%를 세액공제</li> <li>○ 중견기업은 초과금액의 40% 또는 당해 연도 발생분의 8% 적용</li> <li>○ 대기업은 초과금액의 25% 또는 당해 연도 발생분의 수입금액 대비 비율의 1/2로서 2% 이내 한도</li> </ul>
---

- 특허출원(등록, 등록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이 특허를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분쟁 가능성 차단
- 법률적 근거: 발명진흥법 제40조

<p>▶ 발명진흥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li> </ul>
---

- 감면방법: 세액공제
- 대상자: 지식재산 출원·등록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중소기업
- 운영기간: 해당없음

#### ○ 예상 감면액

(단위: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향후 5년간 전망치	1,048	1,048	1,048	1,048	1,048

## - 17년 국제/국내출원 건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국제	4,147 (PCT포함)	1	577	67
국내	37,945	1,094	38,762	18,889

## - 17년 국제/국내출원 비용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합계
국제	4,147건 × 6,000만 원 = 2,488억 원	1건 × 6,000만 원 = 0.6억	577건 × 6,000만 원 × 60% = 208억 원	67건 × 6,000만 원 × 60% = 24억 원	2,721억 원
국내	37,945건 × 200만 원 = 759억 원	1,094건 × 200만 원 = 22억 원	38,762건 × 200만 원 × 60% = 465억 원	18,889건 × 200만 원 × 60% = 227억 원	1,473억 원

\* 국제특허 단가 6,000만 원은 미·일·EU 3개국 출원 시 시장가 적용

\* 상표·디자인 단가는 특허 단가의 60% 반영

-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비용 세액공제율 25%를 적용하면 적용연간 세액공제 추정금액은 1,048억 원(=(2,721 + 1,473) × 25%)

## ○ 주요 세법 변경사항

년도	개정 내용
1982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시행령 제14조 별표6에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 규정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적용여부 미규정)
199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시행령 제8조 별표5에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규정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적용여부 미규정)
20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시행령 제8조에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배제 명시화

## ○ 기타 주요제도 변경사항

해당 없음

## 2. 작성 항목

### 1) 목적

#### ○ (1-1) 조세지출 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요 내용
조세지출 목적	특허출원등록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특허관리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사업화 및 특허분쟁 예방 지원
특정 상황/문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허괴물의 피해사례가 증가 ※국내 침해소송 건수 : ('09) 74 → ('11) 184 → ('13) 1,371 → ('15) 966 ※ 미국 침해소송 건수 : ('09) 2,285 → ('11) 3,220 → ('13) 5,038 → ('15) 5,482 분쟁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부담 가중 ※'16년 산재권 출원·유지 비용 : (중견기업) 1.4억 원, (중소기업) 8.2천만 원
정책 대상자	지식재산 출원·등록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중소기업

#### ○ (1-2) 조세지출과 특정 상황과의 연계성

- 특허출원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확대하고, 특허분쟁 예방
- 국내외 특허분쟁의 확산으로 제품출시 및 수출을 위해서는 특허출원·등록이 필수 절차로 대두되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가중
  - \* 국내 특허 출원·유지 비용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중견) ('14) 1.3억 원 → ('16) 1.4억 원, (중소) ('14) 5.6천만 원 → ('16) 8.2천만 원
- (해외시장) 일반적으로 수출계약時 당사국에서는 사전 특허등록·특허보증 요구
  - \* (미·일·EU 3국 특허등록 비용) 약 6천만 원, (특허보증 비용) 약 5천만 원
- (내수시장) 위조·모방제품 출시에 대비하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특허확보가 필수
  - \* '14년 국내시장에서 위조상품 피해규모 ('16. 관세청, 특허청) : 24조 2,000억 원
-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부담 완화 및 특허·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 미국·중국·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 등 주요국은 특허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11년, 조세연구원, '16년 지식재산연구원)
  - \* 독일은 R&D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및 제품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 중소기업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15.10, 중기중앙회)

※ 특허비용 세액공제 정책 건의('12.9,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 (1-3) 조세지출과 부처의 정책방향, 목표와의 연계성

구 분	주요 내용
부처의 정책방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추진-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 완화
조세지출과의 연계성	중소기업 세액공제가 중소기업 R&D에 재투자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실현

2) 성과지표

○ (2-1) 성과지표의 설정

- 지표명 및 개념: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
- 지표산출방식: 직전 3개년간 평균 특허출원건수의 1.05배를 목표치로 설정
- 목적과의 연계성: 중소기업의 특허비용을 세액공제함으로써 공제액이 R&D에 재투자되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의 증가 유도

○ (2-2)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설정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통계
- 목표치 설정 근거: 중소기업의 3개년 평균 특허 출원건수인 42,897건의 1.05배를 목표치로 설정

구 분	향후 목표치			
	'18	'19	'20	...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	45,042	47,294	49,659	...

3) 대상자

○ 정책대상자 파악

- 정책대상자 선정 : 지식재산 출원·등록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중소기업

- 대상 범위 : 산업재산권 1건 이상 보유 중소기업 99,303개사('17년 기준)

#### 4) 기대효과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중 선택하여 작성)

##### ○ (4-1) 효율성 측면의 효과

- 특허출원 소요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지재산 분쟁 대응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효과
-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이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 (4-2) 형평성 측면의 효과

-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비용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

#### 5) 세출예산

##### ○ 목적이 유사한 세출예산이 있는 경우

- 해당없음

#### 6) 선행연구

- 연구·논문 제목: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손원익·홍승현, '11)
-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R&D조세지원을 통해 특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미국 : 특허신청에서 등록까지 변호사비용 등 특허취득금액
  - 프랑스 : 특허생산, 유지, 방어, 보호비용과 보험료
  - 스페인 : 특허취득비용
  - 포르투갈 : 특허취득 및 유지비용(중소기업에 한함)

- \* 독일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 일본의 경우 R&D 세액공제를 시험연구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특허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 Charles, et al.(2001) : 특허산업이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연평균 7.4% 성장(전체 경제성장률은 3.4%)하였으며, 전체 GDP의 17% 이상을 차지
- Siwek(2005) : IP산업이 개인기업의 전체 GDP기여에서 20%를, 고부가가치 수출품/서비스 기여의 40%를 차지
- Shapiro & Pham(2007) : IP집중 산업군이 타 산업군에 비해 임금수준과 고용창출 효과 높음
  - 임금수준 : \$51,000(IP 집중 산업군), \$35,000(기타 산업군)
  - 고용수준 : 17%(IP 집중 산업군), 13%(기타 산업군)
- 한국개발연구원(2007) : 특허활동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및 고용촉진에 기여
  - 특허기술동향사업으로 인해 국내 특허출원이 연 2.25% 증가하였으며, 이는 0.0254%의 경제성장률 증가와 약 29,000개의 추가 고용 창출 효과

|참고| 특허출원·등록 비용 관련 세액공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 설)	<p><b>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2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b></p> <p>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이하 “특허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특허비용”이란 대리인·법률·행정비용 등을 포함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특허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 III 특허조사·분석 비용의 R&D 세액공제

#### 1. 제도개요

##### ○ 조세지출 내용

- 목적: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도입(25%)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쟁력 강화 필요
- R&D과정에서 수반되는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효율이 적은 강한 특허를 보유하도록 하여 특허분쟁 예방
-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준비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R&D 투자의 중심이 되는 특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조사·분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특허정보의 조사·분석’을 통해 기존 국내의 특허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하는 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또한 특허정보의 분석을 통해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보편적인 R&D 수단으로 자리 매김  
정부도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R&D 사업에서 선행기술조사 등의 특허 조사·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음(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을 정부 R&D사업의 직접비\*로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5항 및 별표2

- 중소기업의 자금여건상 정부지원 없이 자기부담만으로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조사·분석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법률적 근거: 발명진흥법 제40조

-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감면방법: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
- 대상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한 중소기업
- 운영기간: 해당 없음

## ○ 예상 감면액

(단위: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향후 5년간 전망치	214	214	214	214	214

- 2016년 기준 전체 정부R&D 금액과 과제수는 각각 190,044억 원, 54,827건임(국가 R&D 사업관리, ntis.go.kr 참조). 이중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과제는 2,372건(전체 정부R&D의 4.3%)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172억 원(190,044억 원×4.3%) 정도로 추정
- 동 과제에서 집행된 선행기술조사 관련 비용은 14억 원으로, R&D금액 대비 특허조사비용의 비중은 0.17%(14억 원/8,172억 원)임. 이를 민간 R&D금액인 504,011억 원에 적용하면, 민간 R&D의 기술선행조사비용은 857억 원(504,011억 원×0.17%)으로 추정.
- 추정된 기술선행조사비용에 세율 25%를 반영하면, 기술선행조사비용 관련 감면세액은 214억 원(857억 원×25%)

## ○ 주요 세법 변경사항

해당 없음

## ○ 기타 주요제도 변경사항

해당 없음

## 2. 작성 항목

### 1) 목적

#### ○ (1-1) 조세지출 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요 내용
조세지출 목적	특허정보조사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분쟁 예방
특정 상황/문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허괴물의 피해사례가 증가 ※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소송 건수 : 58건('10)→155건('16) ※ 특허괴물의 우리나라 기업 소송건수 : 16건('10)→98건('16)('17, 특허청)
정책 대상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 ○ (1-2) 조세지출과 특정 상황과의 연계성

- 중소기업이 R&D수행 과정에서 특허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강한 특허를 확보하고 국내의 시장에서 기술·특허경쟁력 강화 도모

#### ○ (1-3) 조세지출과 부처의 정책방향, 목표와의 연계성

구 분	주요 내용
부처의 정책방향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조세지출과의 연계성	특허조사·분석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창출함으로써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 리기업의 특허경쟁력을 강화

### 2) 성과지표

#### ○ (2-1) 성과지표의 설정

- 지표명 및 개념: 특허생산성
- 지표산출방식: 투자비용 10억 원당 특허출원 건수를 계산
- 목적과의 연계성: 특허조사·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R&D효율성 제고 및 특허·기술경쟁력 강화

#### ○ (2-2)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설정 출처: KISTEP, R&D 활동 조사보고서

- 목표치 설정 근거: 일반기업의 특허생산성(3.6건)의 2배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10% 증가율 반영

구 분	향후 목표치			
	'18	'19	'20	...
특허조사·분석 수행기업의 특허생산성	7.2	7.9	8.7	...

### 3) 대상자

#### ○ 정책대상자 파악

- 정책대상자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한 중소기업
- 대상 범위 : 중소기업 연구소·전담부서 보유기업 49,838개사('17년 기준)

#### |부표 2| 연도별 중소기업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기업수

(단위: 개사)

연도	연구소	전담부서	합계
2013	17,947	11,153	29,100
2014	20,863	14,478	35,341
2015	23,601	18,125	41,726
2016	25,629	21,099	46,728
2017	26,854	22,984	49,838

\* 자료: 산기협 연구소DB

### 4) 기대효과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중 선택하여 작성)

#### ○ (4-1) 효율성 측면의 효과

-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량특허 창출기회를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강화

#### ○ (4-2) 형평성 측면의 효과

- 해당없음

5) 세출예산

○ 목적이 유사한 세출예산이 있는 경우

- 세출예산 사업명 :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강화
  -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수립
  -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지원 규모: 건당 최대 8,400만 원 한도

분야 코드	부문 코드	프로그램		단위사업		규모(단위:억 원)		
		코드	명	코드	명	2016 결산	2017 예산	2018 예산
110	114	1200	지식재산창출 기반강화	1233-3 03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강화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162.8	129.5	147.1

- 상호보완효과: 연구개발전략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특허조사·분석 비용을 직접지원하며, 세액공제는 정부지원 없이 자비로 특허조사·분석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므로 상호보완효과 발생
- 중복 조정여부: 조특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R&D 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므로 중복지원 문제 해소

6) 선행연구

○ 선행기술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특허성과를 중심으로(임부루 외2인, 2011)

- 선행기술조사가 국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제고하여, 특허정보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개선되었음을 제시
-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 과제가 미지원 과제에 비해 과제당 0.663~0.729개의 특허를 더

출원하고, 0.171~0.206개의 특허를 더 등록

- 특허정보활용 확산 정책의 산업적 기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
  - 특허기술동향조사비 지출규모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실증결과 제시
  -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비와 특허출원의 관계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사사업비 10% 증가 시 특허출원 135% 증가 효과
  - 특허활동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및 고용촉진에 기여
    - 특허기술동향사업으로 인해 국내 특허출원이 연 2.25% 증가하였으며, 이는 0.0254%의 경제성장률 증가와 약 29,0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음

**|참고| 특허조사·분석 비용 관련 R&D 세액공제 개정(안)**

현행	개정(안)
<b>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b> <b>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b> 가. 자체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라. 직무발명보상금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떠는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 바. 기술지도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b>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b> <b>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b> 가. 자체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라. 직무발명보상금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떠는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 바. 기술지도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중소기업이 다음의 기관을 통해 지출한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li> <li>2)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li> <li>3)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li> <li>4)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변리사 사무소</li> </ol>

## IV 기술이전·취득·대여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및 비율 확대

### 1. 제도개요

#### ○ 조세지출 내용

- 목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 제도를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으로 확대하여 10% 세액공제를 인정하며, 중소기업의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25% 세액공제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실시하여 중견기업의 기술대여 활성화 필요. 또한, 대기업의 기술취득 세액공제의 대상기술을 중소·중견기업 기술로 확대 적용(중견기업은 세액공제 대상 기술 제한 삭제)하고, 현행 중소 10%, 중견·대기업 5% 인 세액공제를 25%로 상향조정하여 기술이전 활성화
-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50%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의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25%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 규정(중견·대기업은 중소기업기술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sup>32)</sup>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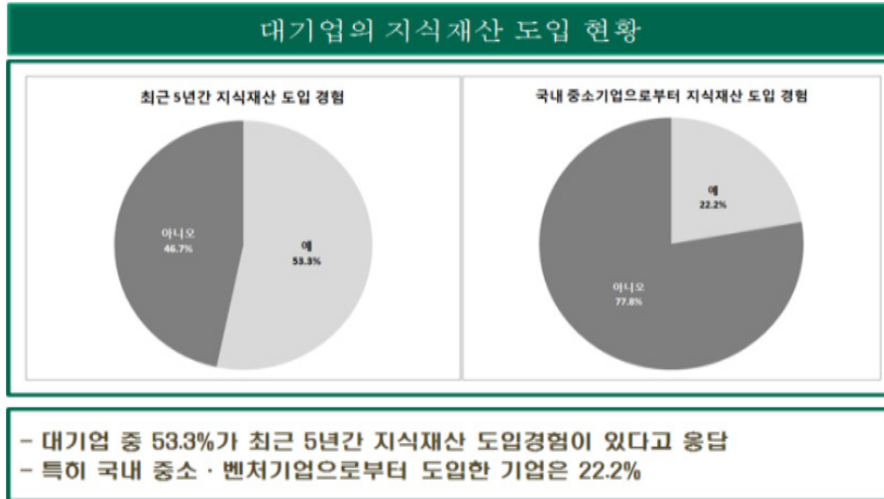
32)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기술이전·취득·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그러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제도를 통하여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25% 세액공제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기술대여소득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할 실익이 없음
- 한편,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으로 인해 많은 공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자체 R&D 보다는 기업간 융합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기업혁신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의 기술취득 세액공제율(중소 10%, 중견·대기업 5% 수준)은 지나치게 낮아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특허청의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이 타대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 등에 이전한 기술 건수는 2016년 5,524건에서 2017년 1,791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부표 3 | 2016~2017 특허취득 건수

To \ From		From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	합계
대기업	2016	3973	10	87	11	91	4172
	2017	1300	28	31	11	75	1445
중견기업	2016	489	1517	212	32	34	2284
	2017	94	533	129	10	40	806
중소기업	2016	889	2379	3640	3831	1642	12381
	2017	282	896	4228	4097	1402	10905
개인	2016	52	8	1150	1118	444	2772
	2017	31	5	1145	1158	520	2859
기타	2016	121	15	220	186	8264	8806
	2017	84	45	309	129	5811	6378
합계	2016	5524	3929	5309	5178	10475	30415
	2017	1791	1507	5842	5405	7848	22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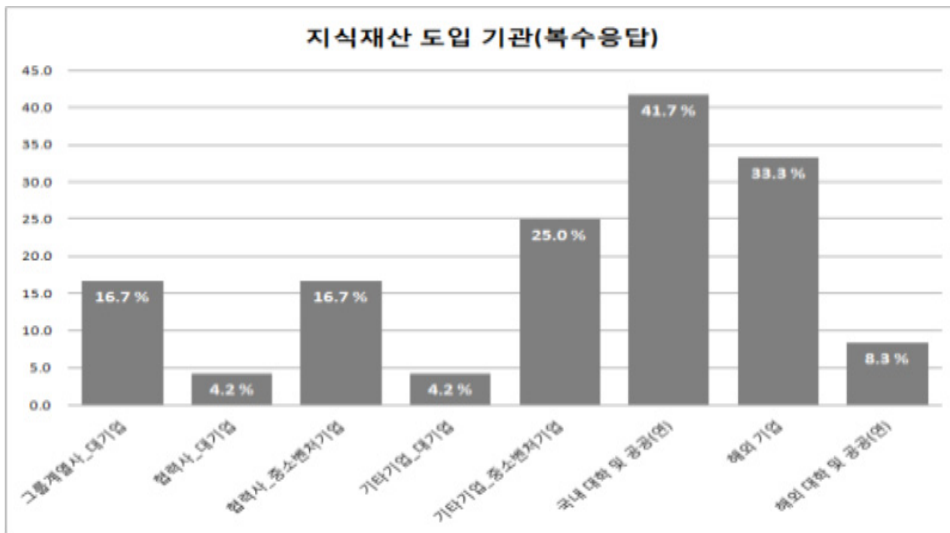
· 대기업의 기술도입 현황을 보면 도입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3.3%이며,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2.2%에 불과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년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지원방향, 2013.12., p.4 참조

· 대기업의 지식재산 도입경험을 보면, 국내대학 및 공공(연)으로부터 도입한 경험 (41.7%)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해외기업(33.3%)으로부터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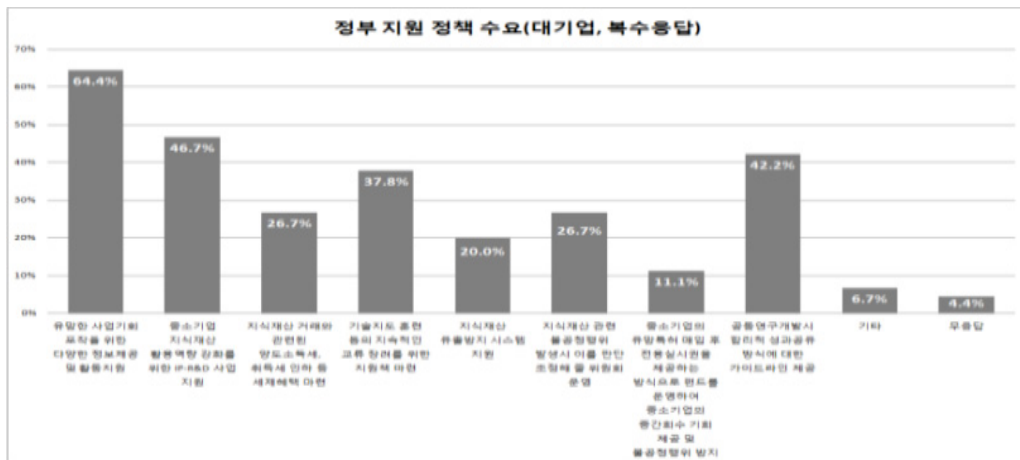
[그림] 대기업의 지식재산 도입 대상 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년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지원방향, 2013.12., p.4 참조

· 특허청의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이 타대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취득한 기술 건수는 2016년 4,172건에서 2017년 1,44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대기업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정책 요구사항으로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 등의 세제혜택 요구(전체 응답기업의 26.7%)

| 그림 | 대기업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수요(복수응답)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년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지원방향, 2013.12., p.18 참조

-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취득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취득 세액공제율을 25%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대기업의 기술취득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갑을관계를 이용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완화하고 산업현장에서 기업 간 정당한 기술거래 관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법률적 근거: 발명진흥법 제40조

▶ 발명진흥법

-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감면방법: 세액공제
- 대상자: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 및 기술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기술을 취득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대기업
- 운영기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운영 - 1982년~2015년  
현재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제도는 운영하지 않음

○ 예상 감면액

(단위: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향후 5년간 전망치	147	147	147	147	147

\* 상기 추정치는 대기업 기술이전 중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에 대한 자료, 대여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대기업의 기술이전건수 비중을 기준으로 예상감면액을 분석함

-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건수가 1,300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건수는 282건(중견기업은 94건)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 전(2006년) 감면규모는 1,513억 원(기재부, '07)이므로, 기술수출금액 비중으로 대기업(90.9%)과 중소기업(9.1%)의 기술이전 소득 세액감면 규모를 추정하면 '06년 대기업의 세액감면 규모는 1,375억 원으로 추정
- 대기업의 기술이전 상대기업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16%와 5%이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규모를 추정하면 289억 원 수준( $1,375억 원 \times (16\% + 5\%) = 289억 원$ )
- '06년과 '16년 대기업 연구개발비 규모의 변화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16년 대기업의 중소기업으로 이전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규모는 736억 원으로 추정( $289억 원 \times (06년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규모) \times 407,787억 원 ('16년 연구개발비) / 160,217억 원 ('06년 연구개발비) = 736억 원$ )
- 2006년 제도는 50% 감면제도이므로 이를 개정안인 10%세액공제로 환산하면, 736억 원/5이므로 147억 원이 됨.
- 대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외에도 기존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및 중견기업 대여소득 세액감면에 따른 추가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기술이전 세액공제 도입 이후 기술거래관련 조세지출 실적이 2~14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조세지출예산서), 기술대여·취득에 대한 예상감면세액 규모는 크지

## 않을 것으로 예측

### ○ 주요 세법 변경사항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89년	소득공제 대상에 기술비법 포함
1999년	소득공제 축소 및 일몰제도 도입('03년 12월) · 발생하는 소득의 50% 소득공제
2004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기술비법에 대한 조세지원 배제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 연장(2년)
2005년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 제도 폐지('05.12)
2014년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재도입 · 소득의 50%, 중소기업에 한함
2015년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 2005년 과세특례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이유로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2014년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제도 재도입

## 2. 작성 항목

### 1) 목적

#### ○ (1-1) 조세지출 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요 내용
조세지출 목적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우수기술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술이전의 실질적 활성화 기대
특정 상황/문제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거래 실적이 저조하며, 산학협력 유형 중에서 기술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남 많은 공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자체 R&D 보다는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혁신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 산업현장에서 기술거래는 아직 저조 ※ 최근 3개년 연간평균 기술거래 건수 : 21,139건
정책 대상자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 및 기술을 대여하는 중견기업 기술을 취득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대기업

#### ○ (1-2) 조세지출과 특정 상황과의 연계성

-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술이전의 활성화 효과 기대

※ 지식재산 이전 기업비율 : 대기업 2.0%,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2.9%(특허청, '16)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인상→기술취득 순투자금액  
인하→기술취득거래 증가→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 대기업 보유특허·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필요  
 ※ 기술이전 및 취득에 따른 세제혜택 건의  
 ('18.3,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서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를 통해 제안)

○ (1-3) 조세지출과 부처의 정책방향, 목표와의 연계성

구 분	주요 내용
부처의 정책방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추진-기술거래 활성화
조세지출과의 연계성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2) 성과지표

○ (2-1) 성과지표의 설정

- 지표명 및 개념: 기업 기술이전 비율
- 지표산출방식: 기업 기술이전 비율(=기술이전 기업수/전체 기업수)
- 목적과의 연계성: 기술이전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취득 과세특례의 대상 및 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 기술의 중소·중견기업 이전과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기술 취득을 촉진하여 기술거래 활성화

○ (2-2)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설정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017
- 목표치 설정 근거: 2017년의 기술이전 비율 2.8%를 기준으로, 매년 0.4% 증가하여 2020년 4.0%를 목표로 설정

구 분	향후 목표치			
	'18	'19	'20	...
기술이전 비율	3.2%	3.6%	4.0%	...

3) 대상자

## ○ 정책대상자 파악

- 정책대상자 선정 :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 및 기술을 대여하는 중견기업 기술을 취득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대기업
- 대상범위 : 특히 실질적으로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보유한 대기업 920개사가 주요 정책 대상 (17. 기준, 특허청)

## 4) 기대효과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중 선택하여 작성)

## ○ (4-1) 효율성 측면의 효과

- 대기업의 기술이전·취득을 지원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 활성화의 실효성 제고
- 지식정보의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 ○ (4-2) 형평성 측면의 효과

- 해당없음

## 5) 세출예산

## ○ 목적이 유사한 세출예산이 있는 경우

- 세출예산 사업명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 지원 내용: 기술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거래전문관 육성
  -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지원 규모: 기술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거래지원

분야 코드	부문 코드	프로그램		단위사업		규모(단위: 억 원)		
		코드	명	코드	명	2016 결산	2017 예산	2018 예산
110	114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보호 및활용촉진	1332 -303	특허기술 활용촉진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거래 지원”)	20.9	20.9	20.9

- 상호보완효과: ‘지식재산거래 지원사업’은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등 기술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므로,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인 법인세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세액감면제도와는 상호보완 관계
- 중복 조정여부: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달라 중복조정 불필요

## 6) 선행연구

### ○ 공공 기술이전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김종갑, 2006)

- 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성과를 연구한 결과, 해당 기술이전을 통해서 평균 20.1%의 매출 향상, 13.86%의 수익향상, 17.66%의 생산성 향상 및 16.15%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시

### ○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 방안 연구(손원익·홍승현, 2011)

- 외국의 경우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무형자산(지식,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박스\*’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에 대해 소득공제 실시
- 네덜란드 : 특허 또는 적격이고 승인받은 연구개발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 중국 : 등록된 특허와 노하우의 이전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 스위스 : 특허, 상표, 디자인, 모형, 저작권의 이전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재산(IP)의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인하시켜주는 조세 지원 제도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 중국, 영국 등에서 실시중

- 2013년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지원방향(지식재산연구원, 2013)
  - 대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고 있음.
-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노민선 · 이삼열, 2014)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조세지원 활용도가 저조
  - 우리나라의 경우 무형자산인 기술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7%)이 유형자산인 설비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율(10%)보다 낮으므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 기술이전 ·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안)

현행	개정(안)
<p><b>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b>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0</li> <li>2.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100분의 10(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등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li> </ol>
<p>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li> <li>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li> </ol>	<p>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25</li> <li>2.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li> </ol>

현행	개정(안)
<p>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하는 경우: 100분의 25(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u>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u></p>

혁신·경제 연구

#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연구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1544-8080 Fax : 042)489-0194 <http://www.kipo.g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 02)2189-2694 <http://www.kiip.re.kr>

ISBN : 979-11-89854-02-7  
DOI : 10.8080/P9791189854027